

녹색성장 연구 11-19-7

글로벌법제연구센터 법제와 정책 연구

기업의 환경정보공시 법제에 관한 고찰

최수정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녹색성장 연구 11-19-7

글로벌법제연구센터 법제와 정책 연구

기업의 환경정보공시 법제에 관한 고찰

최수정

**기업의 환경정보공시 법제에 관한
고찰**
**A Study on Corporate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연구자 : 최수정(부연구위원)
Choi, Soo-Jung

2011. 12. 30.

요 약 문

I. 배 경

- 환경규제 초기엔 명령 및 통제 방식이 채택되었으나 이후 환경정보규제 방식으로서 환경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였고 정보를 일반에 공시함으로써 인하여 유발되는 시장의 압력은 기업의 환경성과 향상을 위한 동기를 부여함
- 온실가스배출량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투자자, 소비자, 사업 파트너, 금융기관에게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이 기후변화로 인한 직·간접 영향을 이해하고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능력의 평가 기초가 됨
- 미국은 증권법상 환경정보에 관하여 공시규제를 하는데 2010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에 관하여 유권적 해석지침을 발표할 정도로 환경정보공시에 대한 관심은 증권법상으로도 증가하고 있음

II. 주요 내용

- 유럽은 기업의 환경규제 방식으로 자율규제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데 EU의 EMAS(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가 대표적 자율적 환경관리시스템으로 EMAS 등록기업의 환경성과를 평가·관리하여 그 환경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제도임

- EMAS 등록기업은 반드시 그 환경성과를 검토하여 기업이 그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곳에서의 환경적 쟁점, 영향, 성과를 평가하여 환경정책보고서를 작성하고 환경프로그램을 구축하여야 함
- EAMS 등록 기업은 각 등록 장소에서 내부환경감사를 실시하고 독립적인 환경인증기관으로부터 외부환경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 환경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미국의 기업 환경정보공시제도는 정확한 투자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환경정보공시는 기업과 자본시장 사이의 환경정보의 비대칭(environmental information asymmetries)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에 대한 시장 압력을 강조함으로써 기업의 환경성과 개선 인센티브를 제공함
- 미국 공개기업의 경우 기후변화리스크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공시서류에 중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여야 하는데 Regulation S-K, Item 303(MD&A) 등이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와 관련 있음
- 기업이 기후변화정보에 대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부실공시 또는 허위공시를 한 경우 주주가 SEC에 이의제기하여 기업이 벌금 및 형벌을 부과 받을 수 있고, 또한 주주는 잘못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그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
- 미국 SEC는 2010년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공시에 관하여 유권적 해석지침을 공표하였음

- 캐나다도 미국과 같이 증권법 차원에서 환경정보를 규율하고 있으며 계속적 공시의무 요건(Continuous Disclosure Obligations), 기업지배구조관행의 공시(Disclosure of Corporate Governance Practices) 등에서 환경관리 공시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캐나다 환경정보공시와 관련하여 계속적 공시요건을 규정한 NI 51-102는 환경위험, 최근 동향(trends) 및 불확실성, 환경책임, ARO(asset retirement obligations), 환경보호요건이 주는 회계적 효과 및 운영효과 등인데 이들 사항에 대한 공시는 증권발행자의 리스크 프로파일에 대한 관찰을 제공하기 때문임
- 환경리스크 공시는 환경리스크를 포함한 리스크 감시와 관리가 이사회 책임이고, 이사회내 위원회 또는 경영진으로만 구성된 위원회(management-level committee)가 환경리스크를 포함한 리스크 감시 또는 관리에 대한 책임을 위임받았다는 점을 포함하여야 함
- 기업의 온실가스배출보고 기준에 관한 국제적 기준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보고 대상인 환경정보의 방법(methodologies), 범위(Scope) 및 한계(Boundaries)에 대하여 투자자의 기업정보에 대한 비교가능성을 제한하고 정보의 질과 신뢰성에 있어서의 회의를 발생시키므로 이에 대한 국제적 기준의 합의가 필요함

▶ 주제어 : 기후변화, 환경정보규제, 리스크 관리,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 EMAS

Abstract

I . Background

- Recently, the regulatory framework of environmental matters has transformed into mandatory disclosure system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to the public. This change has contributed to creating an incentive to enhance corporate environmental performance. Particularly, increased accessibility to inform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 by investors, consumers, business partners, and financial institutions has facilitated corporate understanding of direct and indirect impact of environmental issues on itself and paved the way for corporate risk monitoring related to climate changes.

II . Regulatory Framework in Each Jurisdiction

- The EU has adopted the 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 (EMAS), which is a kind of voluntary regulatory framework. The EMAS enables companies to improve environmental performance through continuous monitoring and assessment thereof. According to the EMAS, corporate participants must conduct an environmental review, assessing the issues, impact, and performance of each place where a company manages its businesses. From the review, companies develop environmental policy statements, initiate an environmental program for each

enrolled place, and create an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for each place. Corporate participants must render internal environmental audits for each place and must subject each place to external audits by independent environmental verifiers.

- The US environment disclosure system serves mainly to ensure the validity and adequacy of financial investment information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The environment disclosure provides with companies, an incentive to elevate environmental performance by reducing environmental information asymmetries between companies and financial markets and amplifying market pressure on companies. According to SEC's Regulation S-K, publicly held companies must disclose three types of environmentally related information in their financial filings with the SEC entailing (1) material effects of the registrant's compliance with environmental laws and regulations; (2) pending material environmental legal proceedings; and (3) discussion and analysis of the registrant's financial condition and contingent liabilities in financial statements. Companies, which failed to comply with Regulation S-K, are subject to criminal sanctions.

- Canada has followed the similar regulatory track to the US. Canadian securities laws, basically governing disclosure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requires for continuous disclosure obligation in NI 51-102 and environment management disclosure obligation through disclosure of corporate governance practices.

III. Concluding Comments

- Nevertheless, since the international standard on corporate greenhouse gas emission limit has not yet established, investors have very limited capability of evaluating corporate data in terms of methodologies, scope, and boundaries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Skepticism might also spread out concerning quality and trustworthiness of information. Therefore, consensus on international standard is called for.

➤ **Key Words : Climate Change, Corporate Disclosure, Environmental Risk Disclosure, Information Regulation, EMAS**

목 차

요 약 문	5
Abstract	9
제 1 장 기후변화와 기업	15
제 1 절 기후변화와 기업의 리스크	15
제 2 절 정보공시규제방식의 연혁적 발전	16
1. 새로운 규제방식의 대두	16
제 3 절 기업자율보고제도	19
1. 의무적 보고의 선도자	20
2. 기업의 자율 환경보고서	22
제 4 절 환경정보공시 규제의 필요성	26
1. 의무적 환경정보공시의 필요성	26
제 2 장 기업의 환경정보 규제	31
제 1 절 기업에 있어서 환경정보의 중요성	31
제 2 절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환경정보공시	34
제 3 장 EU의 EMAS	39
제 1 절 개 요	39
제 2 절 EMAS의 개념 및 핵심요소	44
제 3 절 EMAS 등록 단계 및 혜택	45

제 4 절 EMAS III의 새로운 내용	49
제 5 절 환경보고서	51
제 4 장 미국의 환경정보 공시	57
제 1 절 SEC 환경공시 규제	57
1. 개 요	57
2. SEC의 환경정보공시에 관한 일반원칙	59
제 2 절 ASTM Standard	64
제 3 절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연방규제	66
제 5 장 캐나다 환경정보 공시	69
제 1 절 개 요	69
제 2 절 의무적 공시사항으로서의 환경정보	70
제 3 절 환경 리스크와 환경책임	71
제 4 절 환경정보의 경영상 효과 및 내부통제	77
제 5 절 회계 보고 및 자율보고의 통합	83
제 6 장 결 론	85
참 고 문 헌	89

제 1 장 기후변화와 기업

제 1 절 기후변화와 기업의 리스크

- 최근 기업은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국내외 규제의 강화, 에너지 가격의 상승, 그리고 소비자 요구 및 행동양식의 변화, 환경소송의 위협 등의 부담에 직면하고 있음-
 - 한편 기업은 기후변화의 영향에 순응하거나 극복하기 위한 물리적 리스크를 직면하는데) 이런 리스크는 기업의 온실가스배출 관리와 직접적 관련은 없음
- 기후변화와 관련되어 기업이 직면하는 리스크¹⁾는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음
 - 물리리스크 (Physical risks) : 극단적인 기후이상, 해수면상승, 물 부족,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기후변화의 직접적 영향으로부터 기인되는 리스크
 - 규제리스크 (Regulatory risks)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별 규제 및 국제 규제의 강화로 인한 리스크
 - 운영리스크 (Operational risks) : 상품의 수요 및 소비자 패턴의 변화, 에너지 및 그 수송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부터 기인하는 리스크
 - 경쟁리스크 (Competitive risks) : 경쟁자와 비교하여 경쟁적 우위의 손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리스크
 - 평판리스크 (Reputation risks) : 기후변화 대처방안의 결여가 일반에게 인지됨으로써 발생하는 리스크

1) SEC, Interpretive Guidance on Disclosure Related to Business or Legal Developments Regarding Climate Change <<http://www.sec.gov/news/press/2010/2010-15.htm>>

제 1 장 기후변화와 기업

- 소송리스크 (Litigation risks) : 기후변화와 관련된 소송으로 인한 리스크
- 공급망 리스크(Supply chain risks) : 공급자들이 비용과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증가되는 공급 생산비용의 상승으로 인한 리스크

<온실가스배출에 대한 기업의 대처방안>



제 2 절 정보공시규제방식의 연혁적 발전

1. 새로운 규제방식의 대두

- 환경규제 초기엔 각국 정부는 명령 및 통제(command-and-control)방식을 주로 채택하였으나 점차적으로 정보공시(informational disclosure) 규제 방식으로 전환함
- 기존의 환경규제방법 중 명령 및 통제(Command-and-control)방식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을 규제하는 하향식 통제(top-down) 방법이고 계층적 규제방식(hierarchical regulatory form)인

데 이는 허가시스템 또는 특정한 유형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고유한 기술기반통제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²⁾

- 명령 및 통제방식은 미국의 1970년대의 환경보호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되었으나,³⁾ 명령 및 통제방식은 이제는 낡은 구시대적 수단이라는 것이라는 비판적 견해가 대두되고 있음⁴⁾
-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정부와 그 규제의 대상 모두에게 보다 낮은 비용으로 더 좋은 환경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유연하고 효과적인 규제방법이 최근 요구되었음

□ 환경정보규제(informational regulation)는 명령 및 통제 환경규제방식의 대체수단으로서 고안되었음⁵⁾

- 미국에서 1986년 EPCRA(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313의 TRI(Toxic Release Inventory)가 제정된 이후로, 많은 환경정보공개제도는 산업계의 환경 성과달성에 있어서 상당한 개선 효과를 가졌다는 평가를 받음⁶⁾

2) Eric. W. Orts, Reflexive Environmental Law, 89 NW U. L. Rev. 1227, 1235.
3) Paula C. Murray, Inching Towards Environmental Regulatory Reform-ISO 14000: Much Ado About Nothing or Reinvention Tool?, 37 AM. BUS. L.J. 35, 35-36 (1999).
4) David W. Case, Corporate Environmental Reporting As Informational Regulation: a Law and Economics Perspective, 76 U. Colo. L. Rev. 279 (2005).
5) David W. Case, The Law and Economics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as Regulation, 31 Env. L. Rep. 10,773 (2001); Mark A. Cohen, Information as a Policy Instrument in Protecting the Environment: What Have We Learned?, 31 Env'tl. L. Rep. 10,425 (2001).
6) Mark D. Abkowitz, et. al.,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and Stakeholder Involvement: Searching for Common Ground, 6 Corp. Env'tl Strategy J. 415 (1999).
EPA는 1997년 환경정보규제방식에 참여하여 의무적 환경정보공시의 확대 움직임을 보였지만 부시정권 EPA는 전략적 이유로 환경정보공시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키지는 않았다.

- 환경정보규제(informational regulation)란 규제대상에게 환경정보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을 말함
 - 환경정보규제의 주요 목표는 정부가 기준을 일방적으로 설립하고 강제로 그 기준을 강제하는 전통적인 명령 및 통제방식을 시장과 여론에 중점을 두고 전통적인 규제를 보완·대체하여 운영하는 방식임
 - 이론적으로 사회제도 및 여론은 공시 이후 기업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는데, 이 압력은 규제기업에게 환경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⁷⁾
- 환경정보규제의 대표적인 예가 EPCRA⁸⁾가 만든 TRI(Toxic Release Inventory)이며, EPCRA는 규제범위 내의 있는 회사가 EPA에 대하여 대기, 수자원, 토지 또는 이동될 수 있는 장소로 유출된 특정 독성물질의 연간 데이터를 보고하여야 함⁹⁾
 - EPA는 전국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시함으로써 일반 대중의 환경정보 접근성을 보장함
 - TRI 실시 이후 기업의 온실가스배출의 자발적 감소가 이루어졌고, TRI 공시의 효과는 환경정보 공시방식의 규제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으며 이는 규제대상기업의 환경관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7) 정보를 대중에게 공시함으로써 나타나는 시장압력(market force)은 자율규제의 인센티브를 발생시킨다. 실제로 자율규제형태는 명령 및 통제형식의 전통적인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Case, *supra* note 4, at 383.

8) EPCRA(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는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Union Carbide 공장에서 화학물질을 유출한 사건 이후 이와 같은 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9) U.S. Env'tl. Protection Agency, Toxics Release Inventory (TRI) Program <<http://www.epa.gov/tri/>> (최종방문 2011년 10월 22일).

- TRI는 규제방식으로서의 성공 이외에도 미국에서 기업의 환경성과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으며, 1980년대에 몇몇 기업은 TRI 일반 공개함으로써 생긴 부정적인 압력에 대응하여 환경적 사업운영과 그 성과에 대하여 긍정적인 정보들을 포함한 자율적인 환경보고서¹⁰⁾를 작성·공시하기 시작하였음¹¹⁾
-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보고서의 발전은 미국 환경보호 정책의 도구로서의 환경정보제공규제가 확장되는 유인을 제공하였음¹²⁾
- 이러한 공시규제로 인한 전략은 환경적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 및 통제 방식의 완벽한 대체물은 아니므로,¹³⁾ 이러한 환경정보제공규제방식은 명령 및 통제 방식과 함께 병행하여 사용되어야 함

제 3 절 기업자율보고제도

- 기업의 환경성과에 대한 자율적 외부보고의 기원은 1970년대에 있었던 기업의 사회적 보고(corporate social reporting) 경향 속에서 찾을 수 있고¹⁴⁾ 이러한 움직임은 1980년대 레이건 시대 밑에서 줄어

10) 그러나 환경보고서에 대한 국제적인 최근 경향은 환경보고서에 국한하는 대신에 범위가 넓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가 2000년 처음 제정한 이후 2006년 제3차 개정된 GRI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이 있으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기업의 경제적, 환경적 및 사회적 성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정명환, “우리나라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 현황과 제도적 개선방안”-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분석을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제22권 제6호 (2009), 3539-40면.

11) David, W. Case, Legal Considerations in Voluntary Corporate Environmental Reporting, 30 ENVTL. L. Rep. 10,375, 10,376 (2000).

12) Case, *supra* note 4, at 387.

13) *Id.*

14) Richard MacLean & Romi Gottfrid, Corporate Environmental Reports: Stuck Management Processes Holds Back Real Progress, 7 Corp. Env'tl. Strategy J. 244, 246-47 (2000).

들었으나 몇몇의 정식적인 환경보고가 미국에 출현했던 1980년대 말에 다시 나타남¹⁵⁾

1. 의무적 보고의 선도자

- 미국에서 자율적 환경 보고서 작성의 움직임은 강제적 환경규제 준수 여부를 보고하는 데서 상당히 영향을 받았고, 환경정보의 의무적 보고는 대기 및 수자원 양 및 폐기물 관리를 규율하는 주요 환경법에서 그 시초가 됨¹⁶⁾
- 미국의 주요 연방환경법령은 오염물질유출, 환경법규준수, 관련 정보에 대하여 보고(reporting)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¹⁷⁾ 산업 오염물질배출에 대한 종합적인 요약 유형의 공시는 대기청정법(Clean Air Act)의 연차대기가스배출명세서(Annual Air Emission Statements), 자원보존 및 회복법(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의 유해폐기물격년차공시제도(Hazardous Waste Biennial Reporting System)가 대표적임
- 연방법상의 TRI이외에도 많은 주(states)에서 환경정보공시를 강제하는 “알권리(right-to-know)” 법을 제정되고 있음
- 예를 들어 매사추세츠주와 뉴저지주는 중요한 회계정보(material accounting)로서 기업설비내로 반입하고 사용하여 배출한 물질(주로 화학물질)의 재고현황을 공시할 것을 의무화함

15) Douglas J. Lober et al., The 100 Plus Corporate Environmental Report Study: A Survey of an Evolving Environmental Management Tool, 6 Bus. Strategy & Env't 57, 59 (1997)

16) Case, Environmental Reporting, supra note 11, at 10,376.

17) Case, Environmental Reporting, supra note 11, at 10,376.

- 환경법 이외에도 연방 증권법에 의하면 공개회사(publicly held company)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제출하는 분기별 및 연차재무보고서(quarterly and annual financial reports), 유가증권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s)에 환경관련 법규 준수여부, 제소된 환경소송, 손해배상책임 등을 공시하여야 함
- 재무적 중요성 기준을 충족하는 의무적 환경공시요건은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 하 SEC Regulation S-K 및 S-X에서 규정하고 있음
- 증권사기 일반조항으로 알려진 1934년법의 제10조 b항은 공개회사가 환경사안에 대한 중요한 부실기재 또는 중요 정보의 생략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함
- 그러므로 연방증권법에 의하여 강제되는 환경정보공시는 부실기재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정도만큼 요구됨
- TRI와는 달리 미국 환경법령 및 연방증권법에서 요구하는 환경정보공시는 환경정보의 대중적 접근성 및 정보의 배포(dissemination)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규제기관을 위한 것임¹⁸⁾
- 이러한 환경법규 및 연방증권법하 환경정보공시요건은 단편적이고 정합성 문제를 내포하였으나, 다만 규제기준의 최소한의 준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도된 것임
- 특히 환경법규에 의하여 공시된 정보에 대한 일반대중의 접근에 제한이 있고 대중이 재검토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비용이 부가됨

18) Bradley C. Karkkainen, Information as Environmental Regulation: TRI and Performance Benchmarking, Precursor to a New Paradigm?, 89 Geo. L. K. 257, 284 (2001)

-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법규에 의하여 요구되는 정보공시는 실제적으로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민간 영역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음
- 여러 비영리기관 및 영리기관들은 환경법, 연방증권법 및 수많은 공용 자원(public source)에서 사용되는 정보의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였는데 그 대표적 예로서 Scorecard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Environmental Defense, IRRRC(Investor Resonponsibility Research Center), Innovest 등이 있음
- 이 기관들은 정보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증권분석가, 자산관리자, 사회적 책임투자펀드(socially screened investment funds), 학자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함¹⁹⁾

2. 기업의 자율 환경보고서

- 환경법 및 증권법의 규제대상기업은 환경정보공시의무와 관련되고 기업 공식적인 환경보고서는 기업의 환경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기업이 자율적으로 외부에 발표하는 환경보고서의 문제점으로는 기업 자신이 원하는 환경성과는 확대하고 기업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정보에 대하여는 부실기재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음²⁰⁾

19) Case, *supra* note 4, at 394.

20) 특히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기업의 자율적 환경보고서는 “친환경의 탈(green washing)”을 쓰기 위하여 작성되었다는 비판을 종종 받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green glossies”라고 일컬어지는 보고서 작성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데, “green glossies”는 보고의 정확성보다는 대중의 이미지 조성을 위하여 내용을 선별하여 작성되는 출판물을 일컫는다. Sonja Gallhofer & Jim Haslam, The Direction of Green Accounting Policy; Critical Reflections, 10 *Acct., Auditing & Accountability J.* 148, 157-58 (1997).

- 기업의 자율적 환경보고서의 품질은 1990년대 초반 이후 매우 향상이 되었고,²¹⁾ 모범관행으로서 재무데이터의 공시와 더불어 환경법규위반과 같이 기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까지 포함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²²⁾
- 미국에서 기업의 자율적 환경보고서에 대한 직접적 법적 규제는 존재하지 않으며,²³⁾ 기업은 환경성과 중에서 일반대중에게 공시할 수 있는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재량을 보유하고, 자율적 환경보고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간의 편차가 있음
- 역사적으로 볼 때, 정식적 기업의 환경보고서는 어떠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어떤 유형의 성과 지표가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결여되어 왔음
- 환경보고는 흔히 재무보고와 비교가 되는데, 재무보고의 경우 보고의 규범화 과정이 훨씬 더 오래전부터 발전되어 왔고, 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와 그 이후 IFRS에 의하여 규제되고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에 의하여 감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회계보고를 통하여 공시된 정보는 가치 있고 신뢰성 있는 것으로 널리 인지됨²⁴⁾

21) Ans Kolk, Evaluating Corporate Environmental Reporting, 8 Bus. Strategy & Env't. 225, 118 (1999)

22) 그러나 외부보고서가 질적 다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도 여전히 “green glossy”의 현상을 띄고 있는 보고서가 보이고 있다. Case, *supra* note 11, at 10, 377-78.

23) Case, *supra* note 11, at 10,376.

24) 회계보고제도는 진실되고, 의미있고, 이해되기 쉽고, 적시적이고, 표준화되어 있는 회계정보의 공시를 촉진한다. Allen & Diana M. Zinkl, Raising Standardization, ENVTL. F, Jan.-Feb. 1998, at 28.

- 자발적 기업의 환경보고서는 재무정보와 비교할 때 일관성, 비교성, 신뢰성, 관련성 등이 결여되어 있고, 표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의 책임과 투명성의 모티브로서의 가치가 저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기업의 환경성과 보고서의 표준화 작업은 산업계 등 사적 영역에서 시작되었으며, 산업체, 민간기구, 거래협회, 회계협회에서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그 형식에 관한 가이드라인 또는 체제권고안을 발표하여 왔음²⁵⁾
- 환경보고의 내용 및 형식에 관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자율적 환경보고서간의 일관성 및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에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이는 다양하게 제출된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들로 인하여 환경보고서 체제는 여전히 일관성이 결여되어 보고서 내용 및 체제에 있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²⁶⁾
- 1997년 중반 CERES는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이 프로젝트에는 CEP,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세계지속가능발전위원회 (World Business Council for

25) 이러한 가이드라인이나 보고체제 권고안을 발표한 기구로는 GEMI (Global Environmental Management Initiative), CERES (Coalition for Environmentally Responsible Economies), PERI (Public Environmental Reporting Initiative), WRI (World Resources Institute),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등이 있다. Case, Environmental Reporting, supra note 11, at 10,376.

26) 이러한 배경에는 민간기구들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후원을 제공하는 이해집단을 지나치게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Allen L. White, Sustainability and the Accountable Corporation; Society's Rising Expectations of Business, 41 Env't 30, 37-38. 2000년 CEP (Council on Economic Priorities)는 여론조사에서 기업의 자율적 환경보고서 중 6 퍼센트 만이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형식을 준수하였다고 밝혔다. Richard MackLean & Romi Gottifrid, Corporate Environmental Reports; Stuck Management Processes Holds Back Real Progressm 7 Corp. Envtl. Strategy J. 244, 250, 255.

Sustainable Development), WRI, IRRC, 미국의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President's Council on Sustainable Development) 등이 참여하고 있음²⁷⁾

- 이러한 GRI의 근본적 목적은 환경 및 지속성장가능성 관행 및 성과에 대하여 자발적 보고의 신뢰성 있는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 GRI는 1999년에 지속가능보고서 가이드라인 안(案)을 발표한 후 파일럿 테스트 절차를 거쳐서 2000년 6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현재는 2011년 3월에 공표된 G3.1 Guidelines가 적용되고 있음²⁸⁾
- G3.1 Guidelines의 Part 1은 보고원칙 및 지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① 보고 내용(content)에 대한 원칙,²⁹⁾ 보고서 질(quality)에 관한 원칙³⁰⁾ 보고서 범위(report boundary)를 정하는 지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Part 2에서는 공시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전략과 프로파일(Strategy and Profile), 경영접근성(Management Approach), 성과지수(Performance Indicator)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G3.1 지침에서는 인권, 지역사회, 그리고 여성문제까지도 지속성장가능 보고서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함³¹⁾

27) While, *supra* note 23, at 39.

28) 자세한 내용은 <<http://www.globalreporting.org/ReportingFramework/G31Guidelines/>>

29) G3.1 Guidelines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원칙으로 중요한 사실(materiality), 이해관계자 (stakeholder inclusiveness), 지속가능성에 관한 내용(sustainability context), 및 완전성(completeness)을 제시하고 있다.<<http://www.globalreporting.org/ReportingFramework/G31Guidelines/>>

30) 보고서 질에 대한 원칙으로는 균형(balance),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정확성(accuracy) 적시성 (timeliness), 신뢰성 (reliability), 명확성 (clarity) 등을 제시하고 있다.

31) 이러한 GRI의 궁극적 목표는 회계보고와 같은 정도의 보고체계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지침을 만들고자 한 것이었다.

제 4 절 환경정보공시 규제 의 필요성

1. 의무적 환경정보공시의 필요성

- 많은 법제도는 리스크 공시를 법적 의무가 아닌 도덕적 의무로 간주하고 있음
 - 이런 관점에서, 사회적 손해를 유발하는 기업이 그 손해로부터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합리적인 수단 및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그 기업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음³²⁾
 - 상기 관점에서 볼 때 위험한 활동을 하는 자는 관련한 위해(hazard)를 인식하고, 그 위해를 받을 위치에 처한 사람에게 경고를 할 의무가 있음³³⁾
- 대부분의 민주주의자들은 리스크 정보 소통을 정치적 필수요건이라고 보는데 이는 민주주의제도는 지식을 공유한 시민들이 그들의 특권(franchise)을 행사가 활성화되기 때문임³⁴⁾
- 전문 관리자는 리스트 정보 소통을 통하여 불확실한 기술의 영향을 대중들에게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함

32) 예를 들어 19세기 말에는 위험한 작업현장에 경험이 없는 노동자를 배치한 고용주는 각 노동자가 완전하게 그들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위험을 인지하고 신체적 손상을 입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시를 내릴 의무를 부과하였다. *Ingerman v. Moore*, 27 P. 306, 307 (Cal. 1891)에 의하면 고용주는 작업장의 위험에 대하여 경험이 없는 피고용인에게 지시를 내려야 할 의무가 있었다. Steven L. Bray, “Sealing the Conceptual Cracks in the SEC’s Environmental Disclosure Rules: A Risk Communication Approach”, 18 U. Pa. J. Int’l Econ. L. 655, 668.

33) Restatement (Second) of Torts §301 (1965).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고를 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는 위험한 활동에 관련되어 있는 행위자가 책임부담으로부터 보호되기엔 부족하다. *Id.*

34) Bray, *Id.*

- 예를 들어 많은 리스크관리자는 언론에의 지나친 노출은 여론형성에 큰 영향력을 갖고, 이는 사람들이 환경과 건강에 주는 위협에 대하여 과민반응을 유발한다고 여김³⁵⁾
- 이와 관련하여 언론의 비판가능성에 대하여-리스크 관리자는 리스크를 대중에게 인지시킴으로써 대중을 진정시키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보았는데, 이는 보통 신뢰성 있는 전문가 의견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담당 기관(in authority)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취하는 조치들을 설명하는 것을 그 책임으로 여김
- 리스크 정보 의사소통은 정치적으로 편리하다고 인식되고 있음
 - 법령준수 여부를 모니터하는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명령 및 통제 규제(command and control regulations)보다 정부기관은 환경개혁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을 민간부분(private entities)에게 이동시킴으로써 과도한 노력 또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리스크 정보 의사소통의 기능
 - 리스크 정보의 교환은 기업의 환경 성과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임
 - 정부공무원의 이론에 의하면 환경리스크 정보 교환은 대중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대중들이 지역적 차원에서의 집단적인 정치적 행동에 참여하여 오염물질 배출자가 그 범위반행위를 제한하도록 강제함

35) Paul Slovic, Informing and Educating the Public About Risk, 6 Risk Analysis 403, 410 (1986).

-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전제할 때 기업의 주식 가격은 기업에 대한 정보가 기업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간에 그 모든 정보를 반영함³⁶⁾
- 증권시장이 효율적이라고 가정할 때 회사의 주식은 회사에 대하여 유리하든 불리하든 간에 회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반영함
- 환경책임 및 의무와 관련된 역정보(adverse information)는 기업의 주가를 하락시킴³⁷⁾
-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환경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할 의무를 가진 기업은 증권시장에서 그 기업의 주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관련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인센티브를 보유하고 있음
- 환경정보를 보유하고, 이윤 획득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주주들은 기업의 환경관련 행동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 1990년대 뮤추얼펀드와 연금기금(pension plans)과 같은 기관투자자들의 영향력은 크게 증가하였고,³⁸⁾ 이들 기관투자자들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경향을 보여줌³⁹⁾
- 기관투자자들은 그들이 경영진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위 “월스트리트 원칙”을 고수하지 않음⁴⁰⁾

36) Perry E. Wallace, Disclosure of Environmental Liabilities Under the Securities Law: The Potential of Securities-Market-Based Incentives for Pollution Control, 50 Wash. & Lee L. Rev. 1093, 1126-27 (1993).

37) Steven Bray, *supra* note 32, 690.

38) Institutions Hold Dominant Stake in Equities Market, Fed Board Data Show, 25 Sec. Reg. & L. Rep. (BNA) No.27, at 943 (July 9, 1993).

39) Peter F. Drucker, Reckoning with the Pension Fund Revolution, Harv. Bus. Rev., Mar.-Apr. 1991, at 106.

40) John C. Coffee, Jr., Liquidity Versus Control: The Institutional Investor as Corporate

- 기관투자자들은 소위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ing)”를 할 수 있는데, 이는 양질의 환경정책과 관행을 도모하며, 리스크관리의 대안으로 투자 회사의 환경행태에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음⁴¹⁾
- 환경정책목표 달성의 공통되는 방해요소를 회피하기 위하여 환경정보 교환에 있어서 실패 원인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일반적으로 환경정보교환은 정보를 이해하고 정보에 기하여 행동하는 인간능력의 심리적, 물리적 제한 때문임⁴²⁾
- 인간인지능력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제어장치는 현상유지편향(status quo bias)로 알려져 있는데 인간은 종종 현재 가지고 있는 신념 또는 관행에 집착하며 이는 새로운 것을 실험하는 것이 용이하거나 비용이 낮을 때도 그러한 경향을 보임⁴³⁾

Monitor, 91 Colum. L. Rev. 1277, 1288 n.29 (1991).

41) Wallace, *supra* note 36, at 1138-42.

42) Paul Solvic, Informing and Educating the Public About Risk, 6 Risk Analysis 403, 404-406.

43) Colin F. Camerer & Howard Kunreuther, Decision Processes for Low Probability Events: Policy Implications, 8 J. POL'Y Analysis & MGMT. 565, 577.

제 2 장 기업의 환경정보 규제

제 1 절 기업에 있어서 환경정보의 중요성

-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업의 온실가스배출 정보 및 환경정보의 중요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음
 - CERES의 연구에 의하면 기업이 사업을 운영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화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⁴⁴⁾
 - 온실가스배출량 인벤토리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기업은 탄소배출량(carbon footprint) 인식,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점 평가, 배출량감소계획 개발 및 시행 등이 있음⁴⁵⁾
 - 온실가스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비즈니스 관행을 조사한 연구조사에서 이는 온실가스인벤토리사업을 착수하려고 하는 기업에게 중요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음
 - 온실가스배출량 인벤토리와 그 공시는 같은 산업분야에 있는 다른 기업이 당해 기업의 성과를 벤치마킹하도록 하고 성과향상을 위한 각 기업의 행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됨
 - 결론적으로 온실가스 보고는 기업이 기후변화 영향 및 그 완화조치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나타내는 중요한 방법임
-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배출공시를 의무적으로 규제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음

44) CERES, Corporate Governance and Climate Change. Consumer and technology companies, 22 (2008) <<http://www.ceres.org/resources/reports/corporate-governance-and-climate-change-2008>>.

45) OECD, Transition to a Low-carbon Economy -public goals and corporate practices-, 28 (2010).

제2 장 기업의 환경정보 규제

- 온실가스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함은 정책입안자에게 중요한 도구임
- 국가 전체의 가스배출량 정보를 통합하는 관행은 아직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으나, 기후변화 정책 개발을 위한 정보의 중요한 근원이 될 수 있음⁴⁶⁾
-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산업전반과 각 기업의 성과 및 그 모니터링을 하는데 있어서 유용하고 필수적 정보로 사용됨
- 기업은 일단 자신의 온실가스배출량의 정도 및 그 출처를 파악할 수 있으면 그들의 온실가스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업의 온실가스배출량의 레벨 및 근원의 인식은 기업의 환경보고의 전제조건임
- 탄소배출량 보고기준 및 방법론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국가가 탄소배출량보고 지침 및 요건을 정하여 기업의 경영관행에 있어서의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을 담보하여야 함⁴⁷⁾
- 온실가스배출관련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투자자 이외의 기업의 이해관계자 즉 소비자, 비즈니스 파트너 및 금융기관들에게도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온실가스배출관련정보가 회사의 탄소배출량(carbon footprint)과 기후변화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이해하고,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기업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그 척도가 됨
- 기업의 온실가스배출량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의 회계정보화와 공시에 대한 압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온실가스배출량 보고는 급속하게 발전하고 그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

46) OECD 보고서는 이러한 면에서 우리나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47) 온실가스배출 보고 및 측정에 대한 UK 지침이 이러한 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및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회계정보화 및 공시를 하는 선행주자의 방법론은 곧 표준화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다른 영역에서는 특히 회계적 방법론(accounting methodologies) 및 데이터 인증(verification of data)은 앞으로 중대하게 발전될 것으로 예상됨

각국의 환경정보공시제도 요약⁴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 주<ul style="list-style-type: none">○ NGRS(National Greenhouse and Energy Reporting System)○ National Greenhouse and Energy Reporting Act■ 캐나다<ul style="list-style-type: none">○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of 1999○ CO₂ 가스배출규모가 일정 이상인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함.■ 일 본<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온실가스배출량 의무 보고제도 (2006)○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CO₂ 배출보고서<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년 1,500KL(원유) 이상을 소비하는 기업- 30mt 이상의 logistics, 유통, 수송 분야의 기업○ 기타 온실가스 배출 보고<ul style="list-style-type: none">- 3000t이상의 CO₂와 동등한 가스를 배출하는 기업■ 영 국<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적 보고: 기후변화 합의(climate change agreements)에 따른 온실가스배출 보고○ 의무적 보고: 탄소배출량 감소 약정(Carbon Reduction Commitment,

48) OECD, Transition to a Low-Carbon Economy, Public Goals and Corporate Practices, 31 Box.1.2. (2011).

2010.4.부터 시작)

- 5000개의 기업은 탄소배출 등록 & 모니터 의무
- 15000기업은 그들의 전기사용량 공시(disclose)
- The Climate Change Act of 2008
 - 2012월 4월까지 정부는 온실가스배출 보고에 관한 규제 도입하여야 함
 - UK정부는 2009년 10월 기업의 가스배출보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온실가스배출 측정에 관한 지침 발표
 - 정부는 또한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공헌을 측정하여 검토 중

■ 미 국

- EPA
- 화석연료, industrial GHG 공급자, 자동차와 엔진제조업자, 그리고 25000 이상 메트릭 톤을 배출하는 산업시설에게 의무적 온실가스 보고제도(2011년 3월)
- 2010년 보고를 2011년 9월 30일로 데드라인 연장
- 증권법상 공시규제
- 일반회계기준
 - FASB No.5
- Reg. S-K
- Reg. S-X

제 2 절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환경정보공시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이하 ‘OECD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 및 대중의 그 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은 기업

의 사업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제3장 공시(Disclosure)와 제5장 환경(Environment)에서 강조하고 있음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1976년에 제정되어 2000년에 개정되었는데 이는 다국적기업의 책임 있는 비즈니스 활동(공시, 고용 및 산업관계, 환경, 뇌물, 소비자이해관계, 과학 및 기술, 경쟁 및 세금)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III.2에 의하면 공시, 회계, 감사에 있어서 보다 높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은 환경 및 사회적 보고(environmental and social reporting)를 포함한 비재무적 정보(non-financial information) 보고를 위하여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음
 - 가이드라인 주석에 의하면 기업의 공시를 두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첫 번째 범주는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에서 제시된 공시아이템과 일치함⁴⁹⁾
 - 기업의 공시의 두 번째 영역은 아직도 진화하고 있는 사회보고서, 환경보고서, 및 리스크 보고와 같은 영역인데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범주의 공시를 장려하고 있음⁵⁰⁾
 - 많은 기업들이 재무정보를 포함하여 폭넓은 비재무정보를 공시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관행으로서 약속을 기재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러한 정보의 공시로 간주하고 있음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5. a)에 의하면 기업은 부가적인 정보에 관한 의사교환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가적인 정보에는

49) OECD,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 at 42 (2000).

50) OECD 다국적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 주석 14, at 42.

사회정책, 윤리정책, 환경정책 및 기타 행동규범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기 위하여 의도되는 가치보고서(Value statements) 또는 비즈니스 행동보고서(statements of business conduct)가 포함됨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각국의 법제도, 국제적으로 합의된 관련 사안, 원칙 및 기준 내에서 환경보호, 공중·건강 및 안전을 보호 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적에 공헌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활동을 영위하여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음
 - OECD 가이드라인의 환경에 관한 장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오선언 아젠다 21의 원칙 및 목적을 반영하고 있음.
 - OECD 가이드라인은 Aarhus 협약(Aarhus Conven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Access to Justice in Environmental Matters)을 반영하고 있고 또한 환경관리 시스템에 대한 ISO 기준을 반영하고 있음⁵¹⁾
- 기업은 적합한 환경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시스템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기업 활동의 환경적,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영향에 관한 적합하고 적시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여야 함
 - 환경성과의 개선을 위하여 평가 가능한 목적(objectives) 및 대상(targets)을 확립하여야 하는데 이에 그 목표의 계속적 관련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포함됨⁵²⁾

51) OECD 다국적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 주석, at 46.

52) OECD 다국적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 V. Environment, at 19.

- 건전한 환경관리는 지속가능발전의 중요한 부분이고, 이는 기업의 책임뿐만 아니라 사업기회로도 여겨지기 때문에 다국적기업은 이러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다국적기업의 경영자는 수립한 사업전략 내에서 환경적 쟁점사안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환경성과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시스템적인 접근방법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러한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환경관리시스템은 기업의 환경영향을 통제하고 환경문제를 사업운영으로 통합하는데 필수적인 내적인 체제를 제공하고 있음
- 환경성과의 개선 이외에도 환경관리시스템을 기구화 하는 것은 감소된 운영비용 및 보험비용, 개선된 에너지 및 자원보존, 감소된 범위반 및 책임으로 인한 벌금의 감소, 개선된 자본에의 접근성, 개선된 소비자만족 그리고 향상된 공동사회 및 공중과의 관계 등을 통하여 경제적 편익을 기업에게 제공함
- 건전한 환경관리시스템에 대한 해석은 넓은 의미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장기적인 기업 활동의 환경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 통제를 목적으로 한 행동을 포함하고 오염통제 및 자원관리요소 모두와 관련되어 있음
- 대부분의 기업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의 존재 의의는 기업의 활동을 관리하기 위함인데 내부통제시스템 중 환경에 관한 부분은 환경성과 개선을 위한 목표 및 이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진행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포함하고 있음
- 기업의 환경에 대한 정보 및 관련 환경영향은 대중과의 자신감을 공고히 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고 이러한 도구는 정보가 투

명하게 제공되고, 피고용인, 소비자, 공급자, 계약당사자, 지역사회 등과 같은 이해관계자 및 대중과의 활발한 자문을 장려하는데 이러한 것은 장기적 신뢰 및 상호 이해관계 있는 환경적 쟁점사안에 대한 이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루어짐

- 다국적기업은 비용, 사업비밀(Business confidentiality), 지적 재산권의 보호 등에 관한 사안을 고려하여야 함
 - 기업은 환경, 건강 및 안전에 잠재적으로 미칠 수 있는 기업 활동의 영향에 관한 적정하고 적시적인 정보를 대중과 근로자(employee)에게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는 개선된 환경성과의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포함하여야 함
 - 기업은 그 환경,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정책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공동사회와 적당하고 적절한 의사소통을 하고 또한 자문을 받아야 함⁵³⁾
- 기업은 의사결정과정에서 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예견 가능한 환경, 건강 및 안전관련 영향을 평가하고 대처하여야 함
- 제안된 사업계획이 공중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기업의 행동이 관계당국의 결정에 구속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환경 영향 평가를 기업이 준비하여야 함⁵⁴⁾
 - 기업의 사업 활동은 기업의 화동과 연관되어 있는 잠재적인 환경영향의 사후적 평가와 관련되어 있는데 기업은 법이 강제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53) OECD, 다국적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 V.2. b).

54) OECD 다국적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 V. 3.

제 3 장 EU의 EMAS

제 1 절 개 요

- 유럽은 완전한 환경정보의 공시의 기초로서 정식적인 기업의 환경 보고를 위한 방법으로서 자율규제 모델(self-regulatory model)을 채택하고 있음
- 덴마크 및 네덜란드의 경우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은 공식적 환경보고서를 준비하여 의무적으로 제출(public filing)하여야 하고,⁵⁵⁾ 노르웨이의 경우 기업은 연차회계보고서에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활동 및 그 개선계획을 기재하여야 하며, 스웨덴의 경우 기업은 환경적 허가를 얻거나 또는 관계기관에 하는 연차회계보고에 환경정보를 포함하여야 할 의무를 가짐⁵⁶⁾
- 환경정보공시에 관한 더욱 종합적인 접근방법은 바로 EU의 EMAS (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 이하 ‘EMAS’) 제도인데, EMAS 제도는 자율적인 프로그램으로 기업은 환경관리, 감사, 보고를 위한 기준 절차를 규제적 통제 대신에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음⁵⁷⁾
- 미국의 공시시스템이 대중이 접근 가능한 금융투자정보의 유효성과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과는 달리, 유럽의 EMAS 프로그램은 투자자와 지역사회 상호에게 편익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EMAS 제도는 그 참여기관에게 직접적인 편

55) KPMG ENVTL. Consulting, KPMG International Survey of Environmental Reporting 1999, at 8. OECD, Transition to a Low carbon, at 28.

56) KPNG Report 1999, at 8.

57) EUROPA, Environment, EMAS, Executive Summary, [http:// ec.europa.eu/environment/emas/about/summary_en.htm](http://ec.europa.eu/environment/emas/about/summary_en.htm) (last visited May 19, 2010) [hereafter “EUROPA, Executive Summary”].

익을 주는 동시에 기업의 환경문제 해결방법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⁵⁸⁾

- EMAS 프로그램은 자발적인 환경관리시스템(voluntary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EMS)으로 그 시스템 하에서 기업 및 기타 공공기관이 자신의 환경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하며, 계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제도임⁵⁹⁾
- EMAS 제도는 1995년부터 운영되었고 3번의 개정을 거쳐 EMAS III가 2010년 1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 4,400개가 넘는 기관과 약 7,600 곳이 EMAS에 등록되어 있음
- 이 제도는 1995년(Council Regulation (EEC) No 1836/93) 처음 시행될 때부터 기업이 참여하였는데, 처음 시행된 EMAS는 산업분야(industrial sectors)에 있는 기업에게 제한되었으나, 2001년부터 EMAS는 공공서비스 및 민간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경제분야를 포괄하고 있음 (Regulation (EC) No 761/2001)
- EMAS는 환경관리시스템으로서 ISO 14001의 통합에 의하여 더 강화되었고, EMAS 등록을 외부에 알리는 EMAS 로고의 채용으로 인하여 그 활용도가 향상되었음
- EMAS제도는 또한 금융서비스, 또는 행정절차 및 계획에 관한 의사결정과 같은 간접적인 영향도 그 고려에 포함시킴으로써 더욱 활성화되고 있음⁶⁰⁾

58) See Steven L. Bray, Comment, Sealing the Conceptual Cracks in the SEC's Environmental Disclosure Rules: A Risk Communication Approach, 18 U. Pa. J. Int'l Econ. L. 655, 664 (1997)

59) EUROPA, Executive Summary.

60) *Id.*

- EMAS 제도 참여자는 제한된 규제 통제에 의한 편익을 누리는 대신에 요구되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⁶¹⁾
 - 기업참여자는 반드시 환경성과검토(environmental review)를 통하여 기업이 산업 활동(industrial activities)을 수행하는 곳에서의 환경적 쟁점, 영향, 성과를 평가를 하여야 함⁶²⁾
 - 경성과검토로부터 기업은 환경정책보고서를 개발하고, 환경프로그램을 각 등록된 곳에서 환경프로그램을 구축하여야 함
 - 기업은 각 등록 장소에서 매 3년마다 내부 환경감사(internal environmental audits)를 실시하여야 하고 독립적인 환경인증기관(independent environmental verifiers)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 EMAS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업은 인증된 감사결과를 규격화된 환경보고서를 통하여 대중에게 공시하여야 함
- EMAS제도의 발전은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음

EMAS I	1993. 6. 29-1995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EMAS를 채택하였고 산업체 기업에게 EMAS 프로그램 참가를 허용하였음 - Council Regulation (EEC) No 1836/93
EMAS II	2001. 3. 19-2001. 4. 27.	유럽이사회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새로운 규정을 채택하였고, 이를 정식규정(EC)으로 채택하였음 - Regulation (EC) N°761/2001

61) Case, *supra* note 4, at 4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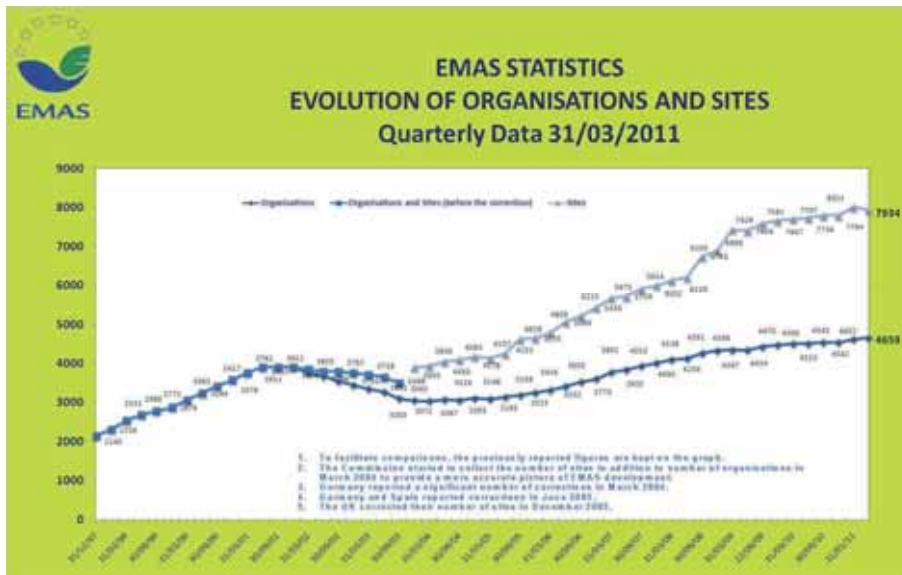
62) Bray, *supra* note 58, at 664-65.

EMAS III	2009. 11. 25-2010. 1. 11.	유럽이사회와 EP Entry가 새로 개정된 규정을 정식규정으로 채택 - Regulation (EC) N°1221/2009
-------------	---------------------------	--

- 가장 최신 버전은 EMAS III로서 2010년 1월 11월에 시행되었는데 개정된 Regulation의 핵심(Regulation (EC) No 1221.2009)은 EMAS 제도의 적용가능성(applicability)을 높이고 가시성(visibility)과 아웃리치(outreach)를 강화하고 있음
- 단일한 회사등록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러 국가에 여러 지점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들에게 행정적 절차 및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킴
- 더욱이 단일한 EMAS 로고는 EMAS를 하나의 일관성 있고 고유한 방식(in one coherent and distinctive way)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 도와줌
- EMAS제도의 참가는 자발적이고 그 대상은 EU(European Union) 및 EEA(European Economic Area) - 아이슬란드(Iceland), 리히텐슈타인(Lichtenstein), 노르웨이(Norway)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으로까지 확장됨
- 많은 수의 후보국가(candidate countries)들이 EU가입의 준비하면서 EMAS제도를 구축하고 있음
- EMAS III제도는 등록을 EU 및 EEA가 아닌 곳에 위치한 기관 및 그 지역사무소(site)도 등록할 수 있음⁶³⁾

63) 이를 위하여 EU 위원회는 각국의 환경감독기관(Compenet Body)와 협조하여 EU와 EEA 이외의 곳에 위치한 기관과 그 지역사무소가 EMAS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할 것이다. EUROPA, Executive Summary.

- EMAS 제도는 시장기반정책방법으로(market-based policy instrument)로 환경을 기반으로 한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서 시장 표지(market signal)를 개선하고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고안된 것임
- EMAS는 원래는 의무적인 프로그램으로 창안되어 고려되었으나 EU회원국에 의하여 EMAS는 자발적 등록시스템으로 변경되어 확정되었고 2011년 1월 현재 등록된 사이트는 7,934개임⁶⁴⁾



- 공개적 환경정보공시는 EMAS 제도의 주요 목적이고 환경정보가 포함된 환경보고서의 의무적 제출을 통하여 이루어짐.
- 공시되는 정보의 투명성(transparency) 및 신뢰성(credibility)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보고서는 독립적인 제3자 인증(verification)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함

64) 자세한 데이터는 EUROPA, Environment, Statistics and Graphs <http://ec.europa.eu/environment/emas/documents/articles_en.htm>

제 2 절 EMAS의 개념 및 핵심요소

- EMAS는 1995년부터 시작된 자발적인 환경관리시스템임
 - EMAS는 기업 및 기타 기관의 환경성과의 지속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며, 기업이 그 환경성과를 측정(measure), 평가(evaluate), 보고(report) 그리고 개선하도록 하여주는 도구이며, 이로 인하여 더 나은 환경적 쟁점의 관리 및 그러한 이슈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가 산출될 수 있도록 함
- 환경관리 부분에서 프리미엄 벤치마크인 EMAS의 핵심요소로는 성과(performance), 신뢰성(Credibility), 투명성(Transparency) 등이 있음
 - 환경정책 목적을 매년 업데이트하고 그러한 목표를 구축하고 평가하기 위한 행동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EMAS 등록을 한 기업과 기관은 그 환경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고 자신들이 적용가능한 모든 환경관련법규를 잘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음
 - 독립적인 감사(independent auditors)가 실시하는 제3자 인증(third-party verification)은 기업의 사업활동과 공시된 환경정보의 가치를 보장함으로써 EMAS 등록을 한 기업과 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줌
 - 환경정보의 투명성(transparency)은 환경보고서(environmental statements)에 의하여 확보되는데 이 환경보고서는 EMAS 등록에 있어서 필수적 요소로서 그 제출은 의무적임
 - 이러한 의사소통장치는 대중에게 기관의 환경적 영향 및 그 성과에 대한 정보에 접근가능하게 하여줌

제 3 절 EMAS 등록 단계 및 혜택⁶⁵⁾

■ EMAS 등록단계

- Emas 등록에 관한 단계로는 ① 환경성과검토(environmental review), ② 환경정책(environmental policy), ③ 환경프로그램(environmental programme) ④ 환경관리시스템(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⑤ 환경감사(Environmental audit), ⑥ 환경보고서(environmental statement), ⑦ 관계기관에 의한 등록 및 EMAS 로고의 사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EMAS 등록을 하기 위하여 기관(organisation)은 환경정책을 의무적으로 채택하여야 하는데 이는 모든 관련 법규제를 준수하고 기관의 환경성과를 계속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약속을 포함하여야 함
- EMAS 등록기업 및 기관은 환경성과검토(environmental review)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환경성과검토를 수행할 경우 기업 등의 활동, 상품 및 서비스, 이를 평가하는 방법, 기관의 법규제 체제, 현존하는 환경관리관행 및 절차 등을 고려하여야 함
- 환경성과검토를 실시한 결과로서 EMAS 등록을 하려는 기업 등은 효과적인 환경관리시스템(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러한 환경관리시스템은 기관의 고위경영진에 의하여 정하여진 환경정책 달성을 그 목적으로 하여야 함
- 환경관리시스템은 기관의 책임, 목적(objectives), 수단(means), 운영과정(operational procedures), 연수의 필요성(training needs), 모니터링 및 의사소통시스템을 수립하여야 함

65) EUROPA, NEW: General EMAS Presentation <http://ec.europa.eu/environment/emas/documents/presentation_en.htm>

- EMAS 등록을 하려는 기관은 환경성과목표에 대한 결과 및 기관의 환경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하여 수행되어야 할 미래의 조치를 정하는 환경성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환경성과재검토, 환경관리시스템(EMS), 감사절차 및 환경보고서는 반드시 공인된 EMAS 인증기관(accredited EMAS verifier)에 의하여 인증되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 효력 있는 환경보고서는 등록을 위하여 EMAS 관련 환경감독기관에 제출되어야 하며, 그 기관이 EMAS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 전에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여야 함

■ EMAS 등록의 혜택⁶⁶⁾

-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하는 대중의 압력 및 규제수단들은 기업의 비즈니스 방법을 변화시키고 있음
 -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기업이 제공하는 친환경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주주와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기업이 그들의 경영철학뿐만 아니라 그 투자전략 및 일상 업무 운영(day-to-day)의 지속가능성(sustainable) 공시는 날로 그 중요성이 증가
- EMAS 등록을 한 기업에게는 ① 비용감소(cost reductions), ② 리스크 최소화 (risk minimisation), ③ 규제 준수 (regulatory compliance), ④ 규제적 구제 (regulatory relief), ⑤ 내부이해관계자와의 개선된 관계 (improved relations with internal stakeholders), ⑥ 외부이해관계자와의 개선된 관계(improved relations with external stakeholders), ⑦ 경쟁상 이점(Competitive advantage) 등의 장점이 있음

66) EUROPA, Environment, Executive Summary.

- EMAS 등록기업은 고도로 발전된 EMAS체제의 이용으로 인하여 환경관리의 질적 향상으로 인하여 비용감소를 할 수 있음
- EMAS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인하여 기업의 환경리스크관리에 공헌을 하여 기업의 운영과정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리스크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고 따라서 기업의 수요에 따른 자원절약과 비용감소가 가능함
- 개선, 정화(cleanups) 등과 같은 반응적인 관리전략(reactive management strategies)으로 인한 재무적 부담이 감소될 수 있고 또한 법규위반으로 인한 벌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감소하므로 보다 나은 사업의 운영통제를 통하여 재무적 이익이 창출될 수 있음
-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EMAS 등록기업의 경우 환경혁신적(eco-innovate) 제품 과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
- EMAS 인증기관(EMAS verifier)이 기업이 관련 환경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기업의 규제준수가 증가될 수 있음⁶⁷⁾
- 다른 기업 및 기관의 모범 사례를 통하여 환경관련 교훈을 배울 수 있음
- EMAS 인증을 받게 되면 친환경제품의 제조과정(green production processes)을 중요시하는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67) 또한 규제자는 규제상 요건을 완화할 수도 있다.

제3 장 EU의 EMAS

- EMAS 등록기업 및 기관에 대하여 소비자 등의 수요자가 호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다른 사업체 및 소비자의 신뢰성 및 자신감이 증가시킬 수 있음
- EMAS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기업은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고, 개선된 작업 장소, 고용인의 도덕성(employee morale), 팀빌딩 등의 인센티브가 기업에게 부여될 수 있음
- 경쟁시장에 있어서의 장점,⁶⁸⁾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개선⁶⁹⁾으로 인하여 기업이미지가 향상될 수 있음
- EMAS 등록의 비용은 고정비용(fixed costs), 외부비용(external costs), 내부비용(internal costs)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조직의 규모와 분야(sector)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고정비용(fixed costs)이란 등록비용(registration fees), IT비용 등의 조직의 인력수와 관련이 없는 비용을 말하고, 외부비용(external costs)이란 고용인 연수비용과 같이 EMAS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외부자문에 드는 비용 등을 말함
 - 내부비용(internal costs)은 내부감사와 같이 EMAS를 구축하고 행정절차를 처리하고 보고하는 조직의 인력에 드는 비용을 의미함.

68) 경쟁상 이점(competitive advantage)은 EMAS 등록으로 시장접근성이 개선되고 시장점유율이 증대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69) 내부이해관계자와의 개선된 관계란 EMAS하에서의 고용인 활동 및 연수로 보다 고용인의 의욕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외부이해관계자와의 개선된 관계란 거주자에게 밀접한 근접성(close proximity)을 가지고 있는 장소에서의 EMAS 등록은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제 4 절 EMAS III의 새로운 내용

- EMAS 규칙(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 Regulation)의 세 번째 버전이 2009년 11월 개정되어 12월 발표되었고 새로운 Regulation (EC) No. 1221/2009는 2010년 1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EMAS II는 부가적인 해석지침이 이를 보완하였는데, 이러한 해석지침이 EMAS III 에서는 본문으로 통합되었음
 - 승인(accreditation), 라이선싱, 환경인증기관의 감독 및 기능(supervision and functions of the environmental verifiers) 조항 등이 EMAS II의 Annex V.에서 규칙의 본문내용으로 편입되었음 (제5장 및 제6장 제18조-제31조)
- 2009년 11월에 개정된 EMAS III에 새로운 조항을 살펴보면 크게 제도(scheme)의 적용가능성(applicability)의 향상과 제도의 가시성(visibility)과 지원(outreach) 강화 등으로 내용을 분류할 수 있음
- 제도의 적용가능성의 향상은 다음을 포함함
 - EMAS III 도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과도기적 등록과정(transitional registration procedures)을 도입하였음⁷⁰⁾
 - 감사주기를 개정하였는데 이는 작은 조직에의 적용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임

70) EMAS III 규칙 제51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도기는 2011년 1월 11일까지 정하고 있다. 예전의 Regulation (EC) No 761/2001하 EMAS 등록기업 및 기관의 등록은 그대로 인정되지만 환경인증기관은 다음 인증기간에 당해 기업이 새로 개정된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제3 장 EU의 EMAS

- 단일회사등록제(single corporate registration)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여러 장소에 지점을 두고 있는 조직에게 행정적 부담 및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 클러스터 접근법이 새로 도입되었는데, 이는 EMAS 등록의 개발 및 구축 면에서 조직 클러스터에게 특정한 도움을 제공하며, 환경적인 핵심 지표(environmental core indicators)는 적절하게 환경 성과를 문서화하고 다년간 비교가능성(multi-annual comparability)을 제공함
- 새로 개정된 EMAS III상의 환경보고서 제출 시 기업 및 기관은 핵심환경지표(core indicator)를 보고할 것이 의무화됨
 - 이러한 핵심지표에는 에너지 효율성, 자원효율성(material efficiency), 수자원, 폐기물, 생물다양성 및 온실가스배출량(emission)임
 - 새로 개정된 규칙은 Annex IV에서 이러한 핵심지표 보고 방법에 의하여 지침을 제공하고 있음
- EMAS 등록조건의 하나로서 등록대상 기업 및 기관은 환경보호에 관한 법적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는데 새로 개정된 규칙은 요건을 확대하고 있음
 - EMAS 등록을 하려는 기관은 그 기관이 환경과 관련된 모든 적용되는 법적 규제요건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대한 증거 또는 서류를 제공하여야 함(제4.4조)
 - 개정 전 EMAS II 제3조 (a)항은 “모든 관련 환경 규제의 준수를 할 때 Annex 1에서 언급한 모든 요건들을 포함하는 환경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 새로운 규정은 소규모기업이 환경보고서를 제출기간과 갱신과정의 빈도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음. (제2조 및 제 7조 참조)

제 5 절 환경보고서

- EMAS제도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환경보고서(public environmental statement)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보고서는 내부감사가 발견한 점과 결론을 정확하게 요약하여야 하고, 간결하고 기술적이지 않는 형식으로 작성함으로써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함
 - 기업 및 기관은 환경보고서를 Annex IV의 요건에 따라 준비하고 환경인증기관(environmental verifier)에게 그 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함⁷¹⁾
- EMAS 제도에 참가하는 기업의 환경보고서가 포함하고 충족하여야 할 최소요건은 다음과 같음
 - a. EMAS 등록기관에 대한 명확한 설명 및 그 활동, 제품, 서비스, 모회사에 대한 관계
 - b. 환경정책과 EMAS 등록기업의 환경관리시스템에 대한 간략한 설명
 - c. 기업에 중대한 환경적 영향을 발생시키는 중대한 직·간접적 환경적 측면에 대한 설명과 이러한 측면에 관련된 영향의 성질에 대한 설명
 - d. 중대한 환경영향에 관한 환경 목표⁷²⁾ 및 대상⁷³⁾

71) Regulation (EC) No 1221/2009 Article 6. 1. (b).

72) 기업의 '환경목표(environmental objective)'란 전체적인 궁극적 목적이며, 이는 기업이 성취하기 위하여 설정하고 가능한 환경정책에서 나오며, 가능한 곳에서 수량화된다. Regulation (EC) No 1221/2009 Art. 2. 11.

73) 환경 대상(environmental target)이란 구체적인 성과대상을 의미하며, 이는 환경목표에서 나오며, 기업 및 기업의 일부 파트에 적용가능하며, 이러한 환경대상은 환

- e. 중대한 환경영향과 관련된 환경목적 및 환경목표 성과 데이터 요약⁷⁴⁾
- f. 중대한 환경영향에 대한 법조항에 대한 성과와 같은 환경성과에 대한 다른 요소(factors)들
- g. 환경과 관련된 법적 요건(legal requirements)에 대한 참조
- h. 환경인증자의 이름, 인가(accreditation) 또는 라이선스 넘버 및 유효기간
- i. 업데이트된 보고서는 적어도 e-h까지 포함된 모든 요건을 포함하고 충족하여야 함

□ 핵심지표 및 기타 관련 환경성과지표

- EMAS 등록기업은 환경보고서 및 업데이트된 환경보고서에 있어서 핵심지표(core indicators)가 기업의 직접적 환경적 측면 및 기타 환경성과 지표(other relevant existing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icators)와 관련이 있는 한 이를 보고하여야 함
- 보고(reporting)내용은 실제적인 투입(input)/영향(impact) 데이터를 포함하여야 하고, 만약 공시가 기업의 상업 또는 산업정보 보안에 위해가 된다면 그 정보의 보안성이 합법적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또는 지역사회 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는 기업은 그 정보를 보고에서 인덱스하는 것이 허용될 수도 있음⁷⁵⁾
- 핵심지표 및 기타 환경성과지표의 요건

경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설정되고 이를 충족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Regulation (EC) No 1221/ 2009 Art. 2. 12.

74) 보고는 핵심 지표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고, Section C의 기타 관련 환경성과지표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75) 즉 실제적인 투입/영향의 발전이 나타나는 기준연도(base line year)를 인덱스 지수 100과 함께 설정할 수 있다. Regulation (EC) No 1221/2009 Annex IV. C. 1.

- 기업의 환경성과의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함
- 이는 이해가능하고 명확해야 함
- 기업의 환경성과 발전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비교를 허용하여야 함
- 가능한 한도에서 섹터, 국가적, 지역적 벤치마크와의 비교를 허용하여야 함
- 가능한 한도에서 규제요건과의 비교를 허용하여야 함

■ 핵심 지표(Core indicators)

- 핵심지표는 모든 기관 유형에 적용되어야 하고 다음의 주요 핵심 환경 분야에서의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에너지 효율성(energy efficiency)
 - 자원 효율성(material efficiency)
 - 수자원(water)
 - 폐기물(waste)
 - 바이오다양성(biodiversity)
 - 온실가스배출량(emissions)

- 하나 이상의 핵심지표가 중대하고 직접적인 환경적 측면에 관련이 없다고 기업이 결론을 짓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그러한 핵심지표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음
 - 기업은 환경검토에 대한 참고로서 그러한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하여야 함

- 각 핵심지표의 구성요소
 - 주어진 분야에서의 총연간 투입량/영향(input/impact)을 나타내는 figure A

제3 장 EU의 EMAS

- 기관의 전체적인 산출량을 나타내는 figure B
 - A/B비율을 나타내는 figure R
 - 각 기업은 각 지표의 모든 3요소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함
- 총연간 투입량/영향을 암시하는 figure A는 다음에 관하여 보고되어야함
-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보고
 - MWh 또는 GJ에 표현된 총 직접 에너지사용량(total direct energy use), 총 연간 에너지소비량(total annual energy consumption)
 - 총 재생에너지 사용량,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기업이 생산한 에너지(전기 & 열)의 총연간 소비량의 퍼센티지
 - 자원 효율성(material efficiency)에 대한 보고
 - 에너지 운반체 및 물을 제외한 다른 물질의 연간 질량유량(annual mass flow)에 관한 자원효율성
 - 수자원에 대한 보고
 - m³에 표현된 연간 총 물 소비량
 - 폐기물(waste)
 - 톤 단위로 표현된 유형(type)에 의하여 소진된 연간 총 생산량
 - 킬로그램 또는 톤 단위로 표현된 독성 폐기물의 연간 총 생산량
 - 생물다양성(Biodiversity)
 - 건축지역(built-up area)에 m³ 단위로 표기된 대지 사용(use of land)
 - 온실가스배출량
 - CO₂ 의 톤으로 표기된 CO₂ ,CH₄ , N₂ O, HFCs. PFCs 및 SF₆ 를 포함한 온실가스 연간 총배출량

- 킬로그램 또는 톤으로 표기된 SO₂, NO_x, 및 PM를 포함한 연간 공기배출량(air emissions)
 - 위에서 정의된 지표 이외에도 기업은 연간 총 투입량 및 영향을 표현하는 다른 지표를 사용할 수도 있음
- 기업의 연간 전체 생산량(output)의 지표, figure B는 모든 분야에서 동일하지만, 기업의 행위유형에 따라 다른 유형의 기업에도 적용될 것이고, 이는 다음과 같이 보고되어야 함
- 생산 분야에서 일하는 기업의 경우, 백만 유로단위로 기재되는 추간된 연간 총 순가치(total annual gross value)를 나타내거나 톤으로 기재되는 연간 총 물리적 생산량(physical output)을 나타내어야 하거나, 작은 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인의 연간 총 이직율(turnover) 또는 인원수를 나타내어야 함
 - 비생산분야의 기업(행정/서비스)의 경우 고용인의 인원수로 기재된 기업의 규모와 관련 있음
 - 위에서 정의된 지표이외에도 기업은 기타 지표를 그 전반적인 연간 생산량을 기재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기타 관련 환경성과 지표
- 각 기업은 환경보고서에 인식된 더욱 구체적인 환경적 측면과 관련된 그 성과를 매년 보고하여야 하고, 제46조에서 언급한 것처럼 분야별 참고 문서를 고려하여야 함
- 대중의 정보접근가능성(public availability)
- 기업의 환경성과에 관심 있는 누구라도 쉽고 자유롭게 원칙 B, C 상 요구되는 정보에 접근가능하다는 것을 환경인증기관에게 알려야 함

제3 장 EU의 EMAS

- 기업은 정보가 기업이 등록되어 있는 회원국의 공식통용어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보장하여야 하고, 기업의 지사(sites)가 위치하는 회원국들 중 하나의 공식용어로 제공하여야 함
- 지역적 책임(local accountability)
 - EMAS제도에 등록하고 있는 기업은 많은 다른 지역을 통괄하여 하나의 환경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할 수 있음
 - EMAS의 의도는 지역적 책임(local accountability)을 보장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은 각 장소의 중대한 환경영향이 명확하게 인식되고 기업환경보고서 내에서 명확하게 보고되고 있다는 점을 보장하여야 함

제 4 장 미국의 환경정보 공시

제 1 절 SEC 환경공시 규제

1. 개요

- 미국 증권규제법의 접근방법
- 유럽의 EMAS 제도적 접근과 달리 미국의 환경정보공시제도는 적합한 투자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려는 목적이 중심이지만 기업이 환경쟁점 사안을 다루는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은 유럽의 EMAS제도 목적과 부합함⁷⁶⁾
- 미국은 환경공시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국가로, 대공황을 계기로 미국 의회는 공개회사에게 일반적인 공시의무를 부과함⁷⁷⁾
- 미국의 증권규제법은 허위공시 또는 부실공시의 경우 벌칙제도와 결합함으로써 기업에 의하여 회계적으로 책임있는 행위를 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 미국 연방증권규제법의 가장 핵심규제 방법은 여전히 공시이고, 미국 공개기업(publicly held company)은 환경규제준수에 대한 정보, 재판관련 절차(judicial proceedings), 및 SEC에 제출하는 회계보고에 관련된 책임을 공시하여야 함
- 이러한 공시는 환경책임 및 환경규제준수비용이 정보의 증권가격결정에 통합되도록 함

76) Steven L. Bray, "Sealing the Conceptual Cracks in the SEC's Environmental Disclosure Rules: A Risk Communication Approach?" 18 U. Pa. J. Int'l Econ. L. 655, 664.

77) *Id.* at 656.

- 환경정보공시는 기업과 자본시장사이의 환경정보 비대칭(environmental information asymmetries)을 감소시키고 산업에 근거한 시장 압력을 강조함으로써 기업이 환경책임 부담하는 것을 최소화하게 하는 인센티브를 강조함⁷⁸⁾
- SEC하 환경정보공시는 기업의 재무성과와 연계됨⁷⁹⁾
- SFAS 5 우발손실로서의 환경책임
 - 1970년대부터 환경보호 이해관계자들이 환경보호목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연방증권법의 잠재성을 확장시키려고 하였고 이들은 SEC가 기업의 운영과 제품이 환경에 주는 영향에 대한 정보의 확대된 공시 의무화를 주장하였음
 - 이러한 움직임은 환경정보에 관한 투명성을 미국 연방증권법이 목적으로 하는 재무상 투명성(financial transparency)에 동등한 정도로 확보하는 것이 목표임⁸⁰⁾
 - SEC는 재무회계, 보고 및 공시에 관한 기준을 정립하고 이행강제할 법적 권한이 있지만 그동안 민간기구인 FASB(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공포한 회계보고 가이드라인 및 원칙에 의존하였음
 - SEC는 회계보고를 떠오르는 쟁점이라고 인식한 후 FASB가 정립한 회계기준에 참조를 했지만 FASB는 법적으로 이행강제할 권한이 없으므로 SEC는 자신의 권한으로 이행을 강제함

78) Case, *supra* note 4, at 408.

79) Adam Sulkowski & Steven White, Financial Performance, Pollution Measures, and the Propensity to Use Corporate Responsibility Reporting: Implications for Business and Legal Scholarship, 21 Colo. J. Int'l. Envtl. L. & Pol'y 491 (2010).

80) Case, *supra* note 4 at 408.

- SFAS 5(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No. 5)는 환경 책임을 우발손실로서 공시의무를 부과하는데 이는 회사가 환경 책임 또는 리스크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직면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임⁸¹⁾
- 환경 우발손실책임의 공시를 촉진하는 SFAS 5와는 별도로 SEC가 직접적으로 제정한 규칙은 환경법규준수 및 정부감독행위에 관련된 중대한 정도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음

2. SEC의 환경정보공시에 관한 일반원칙

- 공개회사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
- 지구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적, 입법적 발전은 배출량 할당거래제(cap and trade law)의 규제를 받는 회사가 배출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드는 자본경비와 같이 운영 및 재무의사결정(financial development)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옴⁸²⁾
- 환경규제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지라도 제품생산비용의 변화를 생산가에 영향을 받는 회사가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변화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음⁸³⁾

81) 예를 들어 화학약품회사가 회사가 Superfund site에서 잠재적 책임 있는 당사자로 분류된다면 독성폐기물 처리에 관련된 우발적 손실을 공시하여야 함.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5: Accounting for Contingencies 5-6 (1975); Joey Tsu-Yi Chen, Green SOX for Investors: Requiring Companies to Disclose Risks Related to Climate Change, 5 J. Bus. & Tech. L. 325, 331.

82) SEC, SEC Issues Interpretive Guidance on Disclosure Related to Business or Legal Developments Regarding Climate Change <[http://www.sec.gov/news /press/2010/2010-15.htm](http://www.sec.gov/news/press/2010/2010-15.htm)> (2011. 6. 7. 최종방문)

83) 예를 들어 공급자의 비용이 증가한다면, 그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SEC, Commission Guidance Regarding Disclosure Related to Climate Change, Securities Act Release No.9106,

■ 재무정보로서의 공시의 한계

- 공개기업의 경우에는 기후변화리스크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공시를 할 의무를 부담하고 회사는 SEC에 대하여 중요정보(material information)를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함
- 중요한 정보란 합리적 투자자가 그들이 정보에 기한 투자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할 정도로 가능한 정보의 mix를 중대하게 변경시킬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 투자자가 판단할 정보임
- SEC 공시요건 중 SEC Regulation S-K, Item 303-MD&A가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 보고에 관련된 사항이고 회사는 반드시 알려진 경향(trends), 수요(demands), 공약(commitments), 사건(events), 불확실성(uncertainties)이 기업의 유동성, 자산, 판매, 수입 또는 이윤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만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된다면 이를 파악하여야 함
 - 그러므로 만약 회사는 합리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알려진 불확실성을 파악하여 그것은 합리적인 투자자가 투자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만한 정보를 보고하여야 함⁸⁴⁾
 - 만약 회사가 기후변화정보에 대한 정보공시의무 위반이 있다면 회사는 여러 책임에 의하여 규율될 가능성 존재함
 - 주주가 회사의 알려진 리스크에 대하여 SEC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회사가 벌금 및 형벌을 부과받을 가능성 있음

Exchange Act Release No.61,469,75 Fed. Reg. 6,290 (Feb. 8. 2010), at 6.

84) J. Kevin Healy & Jeffrey M. Tapick, Climate Change: It's Not Just a Policy Issue For Corporate Counsel-It's a Legal Problem, 29 Colum. J. Envtl. L. 89, 107 (2004).

- 둘째, 주주는 잘못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
- CERES(Coalition for Environmentally Responsible Economics)의 요구에 의하여 SEC가 2010년에 유권적 해석지침을 공표함⁸⁵⁾
 - 그동안 확고한 요건이 없었기 때문에 회사들은 SEC 제출서류에서 기후변화 공시를 대부분 무시하고 SEC 파일링에서 자율공시제도 정보보다 축소하여 공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회사가 SEC 공시에 기인한 책임을 두려워하기 때문임⁸⁶⁾
 - 공시를 촉진하고 이해관계자와 기업 사이의 정보제공의 동등을 위하여 SEC 공시요건은 온실가스배출감소 및 강한 기후변화 완화 전략으로 이끌 수 있음
 - 다음의 세 가지 장치들은 회사와 투자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기업지배구조 평가인데 이는 기후변화가 전략적 문제로서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한 회사의 반응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
 - 가스배출량 평가인데 이는 가스배출량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회사의 노출을 벤치마크하는 것임
 - 재무적 평가인데 이는 회사의 기후리스크와 관련 규제반응에 대한 재무적 효과를 결정함⁸⁷⁾

85) SEC, SEC Issues Interpretive Guidance on Disclosure Related to Business or Legal Developments Regarding Climate Change <<http://www.sec.gov/news/press/2010/2010-15.htm>> (2011. 4. 21. 최종방문).

86) Andrew Schatz, Regulating Greenhouse Gases by Mandatory Information Disclosure, 26 Va. Envtl. L. J. 335 (2008).

87) *Id.* at 364.

■ 증권법상 특정 공시요건⁸⁸⁾

□ 등록회사가 증권거래위원회에 공시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필수형식은 Regulation S-K⁸⁹⁾과 Regulation S-X를 대부분 참조함

□ Item 101 (Description of Business)

○ Regulation S-K Item 101에 의하면 등록회사는 당해회사 및 자회사의 사업에 대한 설명을 의무적으로 공시하여야 함

○ Item 101은 명시적으로 환경법규 준수비용에 관한 공시의무를 부과함

○ Item 101(c)(1)(xii)에 의하면 기업은 물질방출과 환경보호 위한 연방법이나 주법 및 지역적 법조항 준수가 당해회사와 자회사의 자본지출(capital expenditure), 수익(earnings), 경쟁력(competitive position)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공시하여야 함⁹⁰⁾

▪ 등록회사는 현 회기의 남은기간과 다음 회기, 또는 더 장기간⁹¹⁾동안 환경통제설비에 회사가 지출하는 자본지출을 공시하여야 함⁹²⁾

○ 소규모 보고회사(smaller reporting company)는 Item 101(h)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할 의무 있음

▪ Item 101(h)(4)(xi)는 환경법(연방, 주, 지역) 준수 비용 및 효과를 공시하여야 함

88) 이하 SEC, Commission Guidance Regarding Disclosure Related to Climate Change, Release Nos.33-9106; 34-61469; FR-82, 12-21을 요약함

89) 17 CFR Part 229.

90) 17 CFR 229.101(c)(1)(xii).

91) 이 경우 등록회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더욱 장기의 기간이 될 수도 있다. *Id.*

92) *Id.*

Item 103 (Legal Proceedings)

- Regulation S-K의 Item 103에 따라 등록회사는 당해회사 및 자회사가 소송당사자로서 진행 중인 법적 절차(pending legal proceeding)를 간략하게 기술하여야 함
- 등록회사가 정부감독기관에 의하여 유사한 제재를 받을 경우에도 그 절차를 공시하여야 함
- 그러나 등록회사는 사업운영에 부수적인 통상적인 소송이나 Item 103에서 정한 기준액 이하의 법적 절차의 경우에는 공시의 의무 없음
- Item 103에 대한 지침 5.에 의하면 자연환경에의 유해물질방출이나 환경을 보호하는 연방법, 주법, 지방법에 의하여 제기된 행정절차 또는 사법절차는 사업수행에 부수하는 통상적인 소송절차가 아니고 이하 경우에 공시하여야 함
 - 상기절차가 등록회사의 사업 또는 재무상태에 중대할 때
 - 상기절차가 주로 손해배상소송이거나 잠재적 금전제재, 자본비용, 수입에 대한 이월비용, 비용과 관련되고 그 금액이 현재 등록회사 및 그 자회사의 통합재무제표상 현 자산의 10%가 초과할 때
 - 정부감독기관이 소송당사자이고 그러한 법적 절차가 잠재적인 금전제재가 있을 경우
 - 그러나 상기 경우 만약 등록회사가 금전제재가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거나 이자를 제외한 비용이 10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공시할 필요 없음

Item 303 (Management's Discussion and Analysis of Financial Condition and Results of Operations)

- Item 303의 Regulation S-K는 재무상황(Financial Condition) 및 운용결과에 대한 경영자 토론 및 분석(Management's Discussion and Analysis of Financial Condition and Results of Operations: MD&A)을 의무화함
- MD&A의 세 가지 목적은 다음과 같음
 - 투자자가 등록회사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재무제표에 대하여 화법적 설명(narrative explanation)을 제공하기 위함
 - 전체적인 재무공시를 강화하기 위함이고 재무정보가 분석될 수 있는 범위를 제공하기 위함
 - 등록회사의 수입 및 현금흐름의 질, 잠재적 변화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가 회사의 과거성과가 미래성과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함
- Item 503 (Risk Factors)
 - Item 503(c) of Regulation S-K⁹³⁾는 등록회사가 적합한 경우, 위험요소라는 제목 하에서 투자를 위험하거나 투기적으로 만드는 가장 중대한 요소에 대하여 공시하여야 함
 - Item 503(c)에 의하면 리스크 요소공시는 명백하게 그 리스크를 기술하여야 하고, 특정 리스크가 특정 등록회사에게 미치는 영향을 특정하여야 함

제 2 절 ASTM Standard

- ASTM(American Society of Testing and Materials)은 환경책임을 평가하고 공시하기 위한 고유 기준을 채택함

93) 17 CFR 229.503(c).

- ASTM International은 자발적 기준개발을 위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조직이고 이는 산업분야의 기술적 기준을 개발책임을 갖고 있음⁹⁴⁾
- 정부기관은 ASTM 기준을 법률, 규칙, 모범규준으로 수용하거나 지침을 위하여 ASTM을 참조함
- 개별조직은 장소의 환경평가의 연방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ASTM을 적용함⁹⁵⁾
- ASTM은 환경책임 공시를 위하여 지침 E 2173을 발표하였고,⁹⁶⁾ 환경적 사안과 관련된 비용과 책임 평가를 위한 지침 E 2137을 발표하였음⁹⁷⁾
- Standard E 2173은 SEC 요건을 보충하고 환경책임을 위한 공시 요건 MD&A에 적용하기 위한 것임
- 개별 상황에서 환경책임이 중요한 경우 또는 집합적으로(in aggregate) 환경책임이 중대한 경우라고 기업이 믿는 경우에 Standard E 2173은 특정 공시요건을 강제함⁹⁸⁾
- 사회적 책임단체(socially responsible group)인 Rose재단이 SEC에게 ASTM기준을 규칙으로서 정식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청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R 2173은 아직 자발적인 사업 기준으로 남아있음⁹⁹⁾

94) ASTM International <<http://www.astm.org/>>.

95) ASTM International, Standards Worldwide.

96) ASTM E2173 <<http://www.astm.org/Standards/E2173.htm>>.

97) ASTM E2137 <<http://www.astm.org/Standards/E2137.htm>>.

98) Gregory A. Bibler & Christopher P. Davis, Disclosing Environmental Liabilities in the Wake of Sarbanes-Oxley, METROPOLITAN CORP. COUNS., Apr. 2003 <http://www.goodwinprocter.com/~media/Files/Publications/Attorney%20Articles/2003/Disclosing_Environmental_Liabilities_in_the_Wake_of_Sarbanes_Oxley.pdf>

99) Richard M. Schwartz & Donna Mussio, Environmental Disclosure Requirement Under

제 3 절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연방규제

- 2007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Massachusetts v. EPA 사건에서 5-4로 EPA가 대기청정법(Clean Air Act)에서 이산화탄소 및 기타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을 규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음¹⁰⁰⁾
 - 연방대법원은 EPA가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완화하거나 감축시킬 의무가 있고, 이는 기후변화에 의미있는 공헌을 한다고 판결함¹⁰¹⁾
 - 연방대법원은 이 판결을 하면서 이산화탄소 및 기타 온실가스가 대기청정법하의 대기오염물질이라고 규명하였음
- 2008년 EPA는 연방대법원의 상기판결 및 이에 따른 온실가스 규제를 위한 청원에 부응하여 특정 산업분야에서의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배출 규제를 위한 규칙안을 공포하였음¹⁰²⁾
 - 2009년 4월 EPA는 공식적으로 이산화탄소 및 기타 5개의 온실가스를 Clean Air Act하에서 대기오염물질로 분류하였음¹⁰³⁾
 - EPA 행정부서(Administrator of EPA)는 6종류로 분류된 온실가스 오염물질이 공중의 건강과 복지에 해를 준다는 결론과 함께 새로운 자동차 및 자동차엔진으로부터 배출되는 혼합된 이들 가스

the Federal Securities Laws, in Conducting Due Diligence in M&A and Securities Offerings 2009, at 320-22 (PLI COrporate LAw & Practice, Course Handbook Series No. 1746, 2009).

100) Massachusetts v. EPA, 549 U.S. 497 (2007).

101) *Id.* at 521.

102) Regulating Greenhouse Emissions Under the Clean Air Act, 73 Fed. Reg. 44,354 (Proposed July 20, 2008).

103) John M. Broder, E.P.A. Clears Way for Greenhouse Gas Rules, N.Y. Times, Apr. 18, 2009 <<http://www.nytimes.com/2009/04/18/science/earth/18endanger.html>>.

는 공중의 건강과 복지에 위해를 가하는 온실가스오염에 기여를 한다고 결론 내림

- 2009년 4월 EPA는 직접적으로 온실가스 직접 배출원과 석유 및 산업가스 공급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경제 분야의 온실가스배출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자는 제안을 하였음
- 2009년 10월에 공표된 최종규칙에 의하면 EPA의 온실가스 의무적 보고규칙에 의하면 기업은 확인된 6가지의 온실가스 배출을 통제하거나 제한할 필요는 없는 반면, 영향을 받는 시설, 즉 석유기반 전기생산시설, 원유추출소 및 정유소, 플라스틱상품제조업자, 펄프 및 종이 제분소, 화학물질제조업자, 자동차 이동발생원과 온실가스 공급자들을 기준치 이상의 목록대상 온실가스 배출하는 경우에 책임을 요구함
- 예를 들어, 합계 25,000 메트릭톤(metric ton) 이상의 이산화탄소 또는 그 동등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2010년에 배출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데이터를 집약하여 그 후 매년 보고하여야 함¹⁰⁴⁾

104) Mandatory Reporting of Greenhouse Gases, 74 Fed. Reg. 56,260-61 (Oct. 30, 2009).

제 5 장 캐나다 환경정보 공시

제 1 절 개 요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2010년 초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업의 공시 요건에 대한 유권해석적 지침(interpretative guidance)을 발표한 이후에 캐나다 CSA¹⁰⁵⁾는 2010년 10월 환경공시지침(Environmental Reporting Guidance)¹⁰⁶⁾을 발표하였음
- 캐나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지침의 발표가 증권거래법상 기존의 공시요건을 새로이 추가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서론에서 밝히고 있음¹⁰⁷⁾

105) Canadian Securities Administrators(이하 “CSA”라 함)은 캐나다의 지역적 증권규제 기관들(provincial and territorial securities regulators)로 구성된 협회이다. CSA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BC: British Columbia Securities Commission
Alberta: Alberta Securities Commission
Saskatchewan: Saskatchewan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nitoba: Manitoba Securities Commission
Northwest Territories : Superintendent of Securities
Nunavut : Superintendent of Securities
Yukon : Superintendent of Securities
Ontario: Ontario Securities Commission
Quebec: 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Québec)
New Brunswick : New Brunswick Securities Commission
Nova Scotia : Nova Scotia Securities Commission
Prince Edward Island : Securities Office
Newfoundland and Labrador : Department of Government Services.

106) CSA,, CSA Staff Notice 51-333 Environmental Reporting Guidance (2010. 10. 27.)
<http://www.osc.gov.on.ca/documents/en/Securities-Category5/csa_20101027_51-333_environmental-reporting.pdf, 2011. 3. 30. 최종방문>

107) *Id.* at 3.

- 캐나다 증권거래위원회의 이러한 입장은 증권발행회사에 대한 환경적 사안의 영향,¹⁰⁸⁾ 변화하고 있는 규제체제, 환경 문제에 대한 투자자 관심의 증가¹⁰⁹⁾ 등에 기인하고 있음

제 2 절 의무적 공시사항으로서의 환경정보

- 환경정보는 계속적 공시의무 요건에 관한 NI(National Instrument; 이하 NI) 51-102)에서 규정하고 있고 기업지배구조 관행 공시에 관한 규정인 NI 58-101, 감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인 NI 52-110에서 환경관련 공시요건을 규정하고 있음¹¹⁰⁾
- 특정 정보가 의무적 공시사항인지 여부는 중요성(materiality)을 갖추었는지에 결정되며 Form 51-102F1 MD & A(Management's Discussion & Analysis; Form 51-102F1)의 Part 1(e), Form 51-10F2 연차보고서

108) CSA는 이러한 환경적 영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① 회사업무 운영의 방해(공급 및 유통망, 인적 및 물적 자산), ② 중요하지만 계획되지 않은 비용의 발생 초래(환경사고를 대처하기 위한 비용과 같은), ③ 사업운영을 위한 발행 회사의 특허(license), ④ 자본경비에 대한 의사결정(capital expenditure) 및 프로젝트 실행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⑤ 자본에 대한 접근성 및 자본경비의 변화, ⑥ 보험의 적합성 및 유용성(availability)에 미치는 영향, ⑦ 새로운 사업 기회의 제공 등이다.

109) 캐나다 투자자들은 온타리오 증권거래위원회의 2009년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계획(2009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initiative)동안 환경 문제에 대한 공시의 부적합성에 관한 걱정을 드러냈다. 특히 이들은 ① 환경에 관한 주용정보가 자율보고서에서 발견되고 규제기관에의 파일링(securities regulatory filings)에서 공시되지 않을 때, ② 투자자에게 제공된 정보가 완전하지 않고, 신뢰적이지 않으며 발행회사간 비교가능하지 않을 때와 투자자에게 제공된 정보가 투자자에게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표준문안형식의 공시(boilerplate disclosure)일 때, ③ 만약 정보가 증권규제기관에의 파일링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증권규제법하 규정된 CD (continuous disclosure) 서류의 제출기한이 자율보고서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적시적 방법으로 그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때, 그리고 ④ 정보가 회계보고에 통합되지 않을 때 등을 우려하였다. Id. at 4.

110) 이러한 공시요건은 다음의 기준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① 야기되는 리스크 및 관련 사안들, ② 리스크 감시 및 관리, ③ 예측정보(forward-looking information) 요건들, 그리고 ④ NI 51-102하 공시에 주는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채택의 효과 등이다. Id. at 5.

정보 형식(Annual Information Form; 이하 Form 51-102F2)의 Part 1(d)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이 오직 중요정보만이 계속적 공시(CD) 서류에 포함되어야 함

- 계속적으로 공시하여야 할 서류에서 중요성(materiality) 판단기준 중요성 판단 기준은 객관적이어야 하고 환경 관련 정보는 합리적인 투자자가 발행회사의 증권을 매입, 매도, 보유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할 때 그 정보가 생략되거나(omitted) 잘못 기재된 (misstated)되었을 경우 그 투자결정이 변경된다면 그 정보는 중요하다고 판단됨¹¹¹⁾
- NI 51-102에 의하면 ① 환경리스크, ② 최근 동향(trends) 및 불확실성, ③ 현재 해소되어 있거나 장래에 배상이 확실시되는 환경피해배상책임, ④ ARO(asset retirement obligations), 그리고 ⑤ 환경보호요건의 영향을 받는 회계 및 경영효과이며 이들 사항에 대한 공시는 발행자의 리스크 프로파일에 대한 통찰(insight)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성을 띠고 있음¹¹²⁾

제 3 절 환경 리스크와 환경책임

- Form 51-102F2의 Item 5.2에 의하면 발행자는 사업과 발행자에 관련된 리스크 요소를 의무적으로 공시하여야 함
- AIF(annual information form)는 발행회사와 그 사업 관련 리스크라고 믿는 것에 대하여 투자자환경 리스크와 환경책임에게 해를

111) Part 1(f) of Form 51-102F1과 Part 1(e) of Form 51-102F2 참고. Form 51-102F1 및 Form 51-102F2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중요성의 개념은 CICA(Canada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핸드북에 규정되어 있는 회계보고에서의 중요성 개념과 일치한다.

112) CSA STAFF NOTICE 51-333, at 8.

제공하여 증권발행회사의 사업운영 및 재무성과(financial performance)에 관한 리스크의 영향을 투자자가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이는 환경 리스크 및 투자자가 발행자의 증권구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사안을 포함하고 있음¹¹³⁾

- 증권발행자는 계속적 공시에 필요한 서류에 환경 리스크 대처필요성 여부에 관하여 평가(assess)하여야 하고 정보의 공시여부를 결정할 때 모든 관련 환경리스크는 고려되어야 함
- 일반적으로 발행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는 소송 리스크, 물리리스크, 규제리스크, 기업의 평판리스크, 그리고 비즈니스리스크 등의 5가지로 분류될 수 있음

리스크 유형	발행자가 고려하여야 할 점 ¹¹⁴⁾
소송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발행자가 환경소송의 당사자인지 여부 ▪ 소송결과 예상되는 책임 여부와 승소가능성 ▪ 예상되는 법적 절차(legal proceeding)
물리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자가 환경 문제로 인하여 받을 영향, 예를 들어 산업적 오염, 기후변화 패턴, 물의 이용가능성(Water availability) ▪ 포함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의 손상(property damage) - 고용인(employees)을 위한 건강 및 안전 문제 및 일반 대중에 대한 건강 및 안전 문제 - 제조, 제조된 상품의 수송 등을 포함한 사업의 운영 방해 - 주요 소비자 또는 공급자의 운영 방해 - 증가된 보험소송관련 문제(insurance claims) 및 보험책임, 재보험 - 증가된 보험료 및 보험공제

113) CSA, at 8.

리스크 유형	발행자가 고려하여야 할 점 ¹¹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자가 채택할 어떤 리스크 관리전략, 적응전략, 완화전략을 근래에 채택할 계획의 유무 및 이러한 전략의 예상비용
규제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자의 사업 및 전략에 대한 현행 규제 및 잠재적 규제의 실제적 영향 및 기대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는 환경적인 허가(environmental permits), 보고 요건(reporting requirements), 탄소가격시스템(carbon pricing systems) 탄소제한 및 배출권거래시스템(carbon limits and trading systems), 에너지 효율성 기준 및 건축법규(energy efficiency standards and building codes) 등을 포함하며 국내적 규제 및 국제적 규제 모두 포함 - 발행자는 환경법규(environmental legislation or regulation)로 인하여 직면하는 특정리스크를 고려하여야 하고 포괄적인 리스크 요소 공시(generic risk factor disclosure)는 금지되며 정확한 제한 및 목표가 불명확한 경우 범위가정(assumption of ranges)은 이 요소들이 발행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합리적 예상임 ▪ 현재 적용되고 예상되는 규제 요건과 발행자의 현재 요건 중 중요 부분을 준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준수의 현행 비용과 예상되는 장래비용(이러한 비용들은 오염된 장소 재건 또는 독성물 폐기)
평판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발행자의 환경문제 대처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자가 환경문제의 대처능력은 회사의 주요한 무형자산이 되고, 예를 들어 브랜드 가치, 소비자 확신, 고용인의 충성도, 자본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높아지고 프로젝트의 규제상 승인을 받기가 용이함 ▪ 발행자와 지역사회 및 사업관련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결과 및 사업운영에 대한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와 발행자의 관계는 발행자의 사업운영능력과 사업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리스크 유형	발행자가 고려하여야 할 점 ¹¹⁴⁾
사업모델과 관련된 리스크 (Risks relating to business mod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문제에 관한 법적, 기술적, 정치적 과학적 발전이 새로운 중대한 기회 또는 리스크를 창출시켰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 관행의 변화 - 새로운 기술로 인한 변화 - 환경에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소비자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품에 대한 수요의 감소 - 경쟁상품보다 환경에의 영향이 적은 상품의 수요 증가 - 세금 인센티브와 보조금제도의 변경 -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경쟁의 증가 - 대체에너지 생산과 대체에너지로의 전환 수요의 증가 - 탄소에너지와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감소(예를 들어 석유 굴착 · 시추서비스 또는 저장시설관리)

- MD&A는 경영진의 시각을 통한 발행자가 당해 회계연도 동안 얼마나 성과를 이루었는지에 대한 서술적 설명이며 ① 우발적 책임 또는 기타 계약상 의무와 같은 재무제표에는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중요한 정보, ② 재무제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동향 및 리스크, ③ 장래에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동향 및 리스크 등을 기재하여야 함

- Form 51-102 F1에 의하면 증권 발행자는 직전 회계연도동안의 사업운영에 대한 분석을 논의하여야 하는데, 이에는 증권발행자의 성과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공약(commitments), 사건(events), 리스크 또는 불확실성이 포함됨

- 발행자는 환경문제에 관한 동향 및 불확실성이 재무적 성과와 미

114) CSA Staff Notice 51-333 at 9 표. 참조

래의 성과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검토하여야 하며 이런 동향 및 불확실성에 관한 공시여부 결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관련되어야 함

- 발행자가 알고 있는 회계정보, 운영정보 및 기타 정보의 고려, 알려진 동향 및 불확실성의 인식, 그리고 동향 및 불확실성이 발행자의 유동성, 자본 조달(capital resource) 또는 운영의 결과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가질지 또는 가질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될지 여부에 대한 평가 등이 관련 있음
- 증권발행자는 수입, 경비, 현금흐름에 대한 환경적 동향 및 불확실성의 영향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발생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지, 환경적 동향 또는 불확실성의 영향이 재무조건 및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반드시 공시하여야 함

환경 문제가 수입 및 경비에 미치는 영향의 예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문제 또는 동향으로 인한 전체적 또는 부분적인 소비자 기호의 변화 또는 상품 및 서비스 수요의 변화 ▪ 환경문제와 관련된 공급망 요건 변화 ▪ 제품에의 디자인 변경을 요구하는 새로운 원칙 ▪ 혁신적인 기술에의 충성도 및 판매 ▪ 연기되거나 거절된 환경에 대한 규제상 승인 ▪ 배출권 거래의 이용가능성(availability) 및 거래가격 또는 상쇄(offsets)
지출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제한, 건강과 안전 또는 규제적 제한을 대처하기 위한 현존하는 시설에의 새로운 장착의 필요성 ▪ 환경적으로 효율적인 운영 및 과정에 관련된 연구 및 개발 활동 ▪ 자원의 영향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구

환경 문제가 수입 및 경비에 미치는 영향의 예	
	<p>입 및 시행(예를 들어 온실가스배출, 수자원 및 에너지 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가되거나 새로 발생한 보험 담보범위 또는 보험료 ▪ 규제상의 가스배출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배출권 거래의 구입 또는 차감(offsets) ▪ 정부가 설정한 목표가스감축량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의 벌칙 ▪ 이상기후(adverse weather events)에 의하여 손상된 시설의 보수 또는 재건축 ▪ 새로운 “green” 또는 에너지 효율적 기술을 포함한 생산능력에 대한 투자 ▪ offsets 생산프로젝트 투자 ▪ 경비(expenditures) 과련 비용 파이낸싱

- 환경책임은 과거 또는 현재의 상품제조에 기인한 장래의 경비를 지불하여야 하는 법적 비용을 포함하는데 그 예로는 특정 유독물질의 사용, 유출 또는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활동 등이 있음
- 이러한 기업의 의무는 잠재적으로 발생하는데 장래 사건에 따라 발생하거나 또는 새로운 책임을 부과시키는 법규제가 아직은 강제적으로 시행되지 않을 때 발생함
- 잠재적 환경책임(a potential environmental liability)과 함께 증권발행자는 그 관행을 변경하거나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감소하기 위한 새로운 관행을 채택함으로써 잠재적 환경책임 발생을 저지시킬 수도 있음

환경책임의 예 ¹¹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규제 또는 물질의 제조, 사용, 폐기, 유출 또는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활동에 적용되는 의무 요건 또는 범류 관련 요건 준수 의무 ▪ 현존 또는 장래 현장개선의무 ▪ 제정법 또는 규제적 범준수 위반에 따른 민사, 형사, 행정적 범칙금 지급의무 ▪ 인적 손해, 물적 손해, 경제적 손실에 대한 사적 당사자의 보상의무 ▪ 징벌적 손해배상 또는 특별손해배상할 의무 또는 손해확대방지를 위해 조치할 의무 ▪ 천연자원손상에 대한 보상의무

제 4 절 환경정보의 경영상 효과 및 내부통제

- Form 51-102F2의 Item 5.1(1)(k)에 의하면 증권발행자는 발행자의 당해 회계연도의 자본적 경비, 수입, 경쟁적 지위에 관한 환경보호 요건 재무상 및 운영상 영향(financial and operational effect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requirements)을 공시하여야 함
 - 환경보호요건을 논의함에 있어서, 발행자는 ① 정보가 합리적으로 가능하고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비용의 양(quantification of the costs), ② 이 비용과 관련한 예상되는 동향(trends), ③ 발행자의 재무적 및 운영적 결과에 대한 이러한 비용들의 잠재적 영향 등을 공시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새로운 또는 현행 환경법규제 관련된 현존하는 조항들에 관하여 발행자는 환경통제부분 시설 경비를 잔존한 당해 회계

115) CSA Staff Notice 51-333 at 13. 표. 참조

연도동안의 측정된 자본경비의 중요 부분을 공시하여야 하고 이는 계속되는 회계연도 및 발행자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장래의 기간도 포함됨

- 만약 발행자가 운영에 기본이 되는 환경정책을 시행한다면 Form 51-102F2하에서 발행자는 환경정책과 정책시행을 위하여 취하고 있는 단계별 조치를 공시하여야 함¹¹⁶⁾
 - 정책이란 용어는 보다 광의로 사용되는 의미이며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지역사회관계를 위한 정책, 독성 물질의 사용 및 폐기, 유출의 방지에 관한 정책, 재활용, 수자원의 보존, 온실가스배출감축을 위한 정책 등을 포함함
- 사업운영에 기본적인 환경정책을 논의할 때, 발행자는 그들의 사업운영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잠재적 영향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이 토론은 이 정책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양적 정보(quantitative information)가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고 투자자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발행자는 반드시 기업의 환경정책의 목적을 설명하여야 하는데 이는 이러한 환경정책이 해결하려고 목표로 한 리스크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는 발행자가 환경정책을 모니터하고 통제하는지 뿐만 아니라 정책의 유효성을 포함할 수도 있음
- 환경정책들은 발행자가 환경문제와 관련된 리스크를 대처하기 위하여 이용되고 발행자는 환경리스크를 공시하여야 하고 환경정책의 공시는 발행자가 그러한 리스크를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함¹¹⁷⁾

116) *Id.* at 16.

- 기업지배구조 지침(National Policy 58-201) §3.4에 의하면 이사회는 위임사항을 서면으로 채택하여야 하며 사업기회 및 사업 리스크를 고려하는 전략적 계획을 적어도 매년 1회 이상 계획하고 승인하여야 함
 - 또한 이사회는 발행자의 사업의 주요 리스크를 인식하고 그러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적절한 시스템 시행을 보장하여야 함
-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규정하고 있는 Form 58-101F1의 Item 2는 토론토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발행회사는 이사회에게 서면으로 위임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함
 - 이사회가 서면으로 위임된 사항이 없는 경우 이사회는 어떻게 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공시하여야 함

이사회 구조	관련공시요건 ¹¹⁸⁾
이사회내 위원회	- Form 58-101F1의 Item 8은 토론토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발행자는 만약 이사회가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후보지명위원회 이외의 이사회내 위원회를 가지고 있다면 공시하여야 함 - 그 예로는 환경위원회 또는 건강 및 안전 위원회가 될 것이며, 위원회의 위임사항은 환경리스크관리의 책임 포함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에 관한 필수정보 공시에 관한 Form 52-110F1 및 벤처발행자(Venture issuers)에 의한 정보 공시에 관한 Form 52-110F2는 AIF의 감사위원회 규칙(charter)을 공시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는 환경리스크관리위원회와 함께 리스크관리를 책임질 수 있음

117) 이 정보는 투자자에게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어야 하고 투자자는 발행자의 리스크전략이 문제되는 리스크 유형에 적정한지와 발행자의 리스크허용한도(risk tolerance)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관심이 있을 수도 있다. *Id.* at 16.

- CSA 주석에 의하면 환경 리스크 감시 및 관리에 관한 공시는 다음을 나타내어야 함
 - 환경리스크를 포함하여 리스크 감시와 관리는 이사회의 책임이라는 점과, 이사회 내 위원회 또는 경영진으로 구성된 위원회 (management-level committee)는 환경리스크를 포함한 리스크감시 또는 관리에 대한 책임을 위임받았다는 점이 공시에 포함하여야 함
- 환경리스크 공시는 ① 발행자 리스크 프로파일의 개발과 정기적 검토, ② 발행자의 전략적 계획에 리스크감시와 리스크 관리 통합화, ③ 리스크관리 정책과 절차를 포함한 리스크 관리의 중요 요소의 식별 (identification), ④ 리스크관리정책 및 절차의 유효성에 대한 이사회의 평가 등이 증권발행자 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포함하여야 함
 - CD(continuous disclosure)서류의 환경공시 내부적 통제절차로는 위하여 대하여 감사위원회 검토, 이사회 승인, 그리고 CEO 및 CFO의 인증(certification)이 있음

담당자	환경공시 내부통제절차 ¹¹⁹⁾
감사위원회 검토	- NI 52-110하,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정보를 공시하기 전에 발행자의 재무제표 및 MD&A를 검토하여야 함
이사회 승인	- NI 51-102하, 이사회는 연간 및 중간 재무제표와 MD&A를 승인하여야 함 - 사회는 중간 재무제표와 MD&A의 승인을 감사위원회에 위임할 수도 있음

118) CSA Staff Notice 51-333 at 17. 표. 참조

담당자	환경공시 내부통제절차 ¹¹⁹⁾
CEO와 CFO 서명 및 인증	NI 52-109는 발행자의 재무제표 및 발행자의 MD&A와 AIF, 모든 중요한 관점에서 공정하게 공시되어 있는 발행자의 재무상태, 운영결과 및 현금흐름에 대하여 인증권한 있는 임원이 서명·승인하여야 함

- 주석에 의하면 발행자의 MD&A와 AIF에서의 중대한 환경문제의 의미 있는 논의는 발행자의 재무상태, 사업운영의 결과 등에 관하여 공정공시(fair presentation)를 달성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함
 - 발행자의 공시가 부실표시(misrepresentations)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CEO와 CFO가 승인한다는 점이 의미 있음
- 환경공시 내부통제절차는 ① 환경문제가 발행자의 예측가능한 미래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사업 및 그 운영에 줄지, ② 발행자의 현재 및 장래의 환경리스크와 책임의 크기, 그 원천 및 성격이 무엇인지, ③ 수입, 경비 및 현금흐름에 대한 환경문제의 영향, ④ 발행자의 재무상태 및 유동성에 환경문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⑤ 환경정보의 투자자에 대한 중요성(materiality)를 경영진의 평가가 어떠한지와 이 경영진의 평가와 재무제표, MD&A, AIF의 공시가 모순되지 않는지 등이 고려됨
 - 이러한 검토, 승인, 서명 및 확인절차를 지원하기 위하여, 발행자는 환경문제 공시와 관련하여 그 엄격성을 지키기 위하여 적절한 통제 및 그 절차를 보유하여야 하고 감사위원회와 서명·확

119) CSA Staff Notice 51-333 at 22. 표. 참조

인하는 임원은 근본적인 통제 및 절차를 구축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

담당책임자	통제와 그 절차 ¹²⁰⁾
감사위원회 책임	NI 52-110하에서, 감사위원회는 회사가 발행자의 재무제표로부터의 중요한 회계정보 공시를 검토하기 위하여 적합한 절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함
공시 통제 및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I 520198, 토론토상장회사의 서명·확인임원은 반드시 공시통제 및 절차, 회계보고에 대한 내부 통제 구축 및 시행에 책임이 있음 - 토론토상장회사의 서명·인증한 임원은 ① 공시된 한계, 구축된 통제 및 그 절차에 규율된다는 점, ② 통제 및 절차의 효율성을 통제하고 그 인증하는 임원의 감독하에 그 통제 및 절차가 평가 되도록 하였다는 점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이사 및 환경공시를 서명·인증한 임원은 회사 경영진이 경영진 분석 및 의사결정 목적, 투자자, 규제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공시를 목적으로 한 신뢰성 있고 적시적인 환경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시스템, 과정 및 그 통제를 구축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며 환경에 대한 정보가 회계보고와 동일한 지배과정, 통제 및 절차에 규율되는지 여부가 고려되어야 함

□ 적절한 정보수집 및 보고시스템의, 관련 통제 및 그 절차의 구축은 경영진의 판단과 적절한 인력자원의 투입이 필요함

120) CSA Staff Notice 51-333 at 23. 표. 참조

- 일부 발행자들은 환경정보와 관련하여 신뢰성 있는 평가 및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그렇지 않음
- 시스템 및 그 통제는 NI 52-109하 CEO 및 CFO 인증을 포함하여 증권 규제적 신고(securities regulatory filings)를 위하여 필요한 기반임

제 5 절 회계 보고 및 자율보고의 통합

- 일부 증권발행자는 자율보고(voluntary reporting) 형식으로 환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¹²¹⁾
 - 자율보고는 증권법상의 CD 이외의 방법으로서 투자자들에게 주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식임
- 발행자는 자율적 보고서 기재 정보 중 증권규제법하에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CD서류에서 의무적으로 공시될 것이 요구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함
 - 발행자가 증권규제법 하에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환경 문제는 그들의 웹사이트 또는 자율보고서 또는 여론조사에 대한 응답에서 공개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음
- 발행자는 그들의 웹사이트, 자율보고 및 여론조사에 대한 응답이 부실기재(misrepresentations)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여야 함

121) 기업의 자율보고서는 GRI가 개발한 체계와 같은 지속적 성장가능보고서 체계와 함께 작성될 수 있다.

- 자율보고서 내용을 증권규제기관에 제출하여야 의무는 없지만 증권유통시장공시를 위한 민사책임 규정에 의하여 규제를 받음

- 발행자는 이들 서류에서의 공시 또는 웹사이트상의 공개된 정보가 그들의 증권규제기관에 제출하는 CD 서류의 공시와 일치한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함¹²²⁾

122) CSA는 자율보고서에 대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관행에 대하여 다음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즉 이사회는 다음의 질문을 유념하여야 한다: ① 경영진이 내린 환경정보의 투자자에게의 중대성 여부 ② 자율보고에서의 중대한 정보가 증권규제기관의 파일링에도 적시적으로 공시되었는지 여부, ③ 경영진은 어떠한 방법으로 회사의 웹사이트 또는 자율보고서에서 공개된 정보가 일치된다는 것을 보장하는지 여부 ④ 자율보고서의 예측정보는 증권법상 예측정보요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이다.

제 6 장 결 론

- 환경규제 초기엔 명령 및 통제 방식이 채택되었으나 이후 환경정보규제 방식으로서 환경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였고 정보를 일반에 공시함으로써 인하여 유발되는 시장의 압력은 기업의 환경성과 향상을 위한 동기를 부여함
- 온실가스배출량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투자자, 소비자, 사업파트너, 금융기관에게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이 기후변화로 인한 직접적 및 간접적 영향을 인식하고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기초가 될 수 있음
- 유럽은 기업의 환경규제 방식으로 자율규제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데 EU의 EMAS(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제도가 대표적인 자율적 환경관리시스템으로 그 아래에서 기업 등의 환경성과를 평가·관리하여 계속적으로 환경성과를 향상시키는 제도임
- EMAS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은 반드시 자신의 환경성과를 검토하여 기업이 그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곳에서의 환경 문제, 그 영향 및 성과를 평가하여 환경정책보고서를 작성하고 환경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하여야 함
- EAMS 프로그램 등록 기업은 각 등록 장소에서 내부 환경감사를 실시하고 독립적인 환경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 환경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미국의 기업 환경정보공시제도는 적합한 투자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환경정보공시는 기업과 자본시장 사이의 환경정보의 비대칭(environmental information asymmetries)

제6장 결론

문제를 감소시키고 기업에 대한 시장 압력을 강조함으로써 기업의 환경성과 개선 동기를 부여하고 있음

- 공개기업의 경우 기후변화리스크를 SEC에 공시하여야 하고 중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여야 하는데 Regulation S-K, Item 303 (MD&A)이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변화 리스크 보고와 관련있는 규칙임
- 기업이 기후변화정보에 대한 공시의무를 위반한다면 주주가 SEC에 이의제기를 하여 기업이 벌금 및 형벌을 부과 받을 가능성이 있고, 주주는 잘못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
- SEC는 2010년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공시에 관하여 유권적 해석 지침을 공표하여 환경정보 공시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있음
- 캐나다도 미국과 같이 증권법 차원에서 환경정보를 규율하고 있으며 계속적 공시의무 요건(Continuous Disclosure Obligations), 기업지배구조관행의 공시(Disclosure of Corporate Governance Practices) 등에서 환경관리 공시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계속적 공시요건을 규정한 NI 51-102는 환경 위험, 최근 동향(trends) 및 불확실성, 환경책임, ARO(asset retirement obligations), 환경보호요건이 주는 회계상 효과 및 운영효과 등인데 이들 사항에 대한 공시는 증권발행자의 리스크 프로파일에 대한 관찰을 제공하기 때문임
- 환경리스크 공시는 환경리스크를 포함한 리스크 감시와 관리가 이사회 책임이고, 이사회내 하부위원회 또는 경영진으로만 구성된

위원회가 환경리스크를 포함한 리스크 감시 또는 관리에 대한 책임을 위임받았다는 점을 포함하여야 함

- 기업의 온실가스배출보고 기준에 관한 국제적 기준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보고 대상인 정보공시 방법, 그 공시범위 및 한계에 대하여 투자자의 기업정보에 대한 비교가능성을 제한하고 정보의 질과 신뢰성에 있어서의 회의를 발생시키므로 이에 대한 국제적 기준의 합의가 필요함

참고 문헌

I. 국내문헌

- 박훤일, “환경공시에 관한 국제기준의 강화와 국내기업의 대응방안”, 기업법연구 제15집 (한국기업법학회, 2003)
- 안수현, “미국 상장기업의 환경정보 공시규제: 현황과 시사점”, 상사법연구 제26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2007)
- 정명환, “우리나라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 현황과 제도적 개선방안”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분석을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제22권 제6호 (대한경영학회, 2009)
- 한 철, “정보규제와 환경정보공시 시스템”, 경영법률 제17집 제1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6)
- _____, “지구변화와 기업의 환경공시책임”, 경영법률 제21집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1)

II. 국외문헌

- Andrew Schatz, Regulating Greenhouse Gases by Mandatory Information Disclosure, 26 Va. Envtl. L. J. 335 (2008)
- Bradly C. Karkkainen, Information as Environmental Regulation: TRI and Performance Benchmarking, Precursor to a New Paradigm?, 89 Geo. L. J. 257 (2001)
- CSA, CSA Staff Notice 51-333 Environmental Reporting Guidance (2010. 10. 27.)
- David, W. Case, Legal Considerations in Voluntary Corporate Environ-

참 고 문 헌

- mental Reporting, 30 ELR 10,375 (2000)
- _____, The Law and Economics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as Regulation, 31 ELR 10,773 (2001)
- _____, Corporate Environmental Reporting As Informational Regulation: a Law and Economic Perspective, 76 U. Colo. L. Rev. 279 (2005)
- Douglas J. Lober et al., The 100 Plus Corporate Environmental Report Study: A Survey of an Evolving Environmental Management Tool, 6 Bus. Strategy & Env't 57 (1997)
- Eric. W. Orts, Reflexive Environmental Law, 89 NW U. L. Rev. 1227 (1995)
- Gallhofer & Jim Haslam, The Direction of Green Accounting Policy; Critical Reflections, 10 Accounting Auditing & Accountability J. 148 (1997)
- Joey Tsu-Yi Chen, Green SOX for Investors: Requiring Companies to Disclose Risks Related to Climate Change, 5 J. Bus. & Tech. L. 325 (2010)
- John C. Coffee, Jr., Liquidity Versus Control: The Institutional Investor as Corporate Monitor, 91 Colum. L. Rev. 1277 (1991)
- Mark A. Cohen, Information as a Policy Instrument in Protecting the Environment: What Have We Learned?, 31 Env'tl. L. Rep. 10,425 (2001)
- Mark D. Abkowitz, et. al.,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and Stakeholder Involvement: Searching for Common Ground, 6 Corp. Env'tl Strategy J. 415 (1999)

- OECD, Transition to a Low-Carbon Economy, Public Goals and Corporate Practices (2011)
- Paula C. Murray, Inching Towards Environmental Regulatory Reform-ISO 14000: Much Ado About Nothing or Reinvention Tool?, 37 AM. BUS. L.J. 35 (1999)
- Perry E. Wallace, Disclosure of Environmental Liabilities Under the Securities Law: The Potential of Securities-Market-Based Incentives for Pollution Control, 50 Wash. & Lee L. Rev. 1093 (1993).
- Peter F. Drucker, Reckoning with the Pension Fund Revolution, Harv. Bus. Rev., Mar.-Apr. 106 (1991)
- Richard MacLean & Romi Gottfrid, Corporate Environmental Reports: Stuck Management Processes Holds Back Real Progress, 7 Corp. Env't Strategy J. 244 (2000)
- SEC, Commission Guidance Regarding Disclosure Related to Climate Change, Securities Act Release No.9106, Exchange Act Release No.61,469,75 Fed. Reg. 6,290 (Feb. 8. 2010)
- Steven L. Bray, "Sealing the Conceptual Cracks in the SEC's Environmental Disclosure Rules: A Risk Communication Approach", 18 U. Pa. J. Int'l Econ. L. 655 (1997)